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과제
- 2. 유민과 명화적
-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과제

조선 후기는 중세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봉건적 사회구성이 급속도로 변동·해체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활발하게 추구되던 시기였다. 변화의 움직임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조선 후기라는 시간적 범주 속에서도 특히 변혁의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19세기는 민중의 저항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기였다. 이 때의 민중항쟁은 외형상 봉건지배층의 가혹한 탐학과 빈발하고 있던 극심한 재해 등이 계기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사회구조가 민중의 삶과 극도의 마찰을 빚어내지 않을 수 없게끔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고, 나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봉건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민중의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19세기의 사회변동은 결코 19세기 역사 안에서만의 우연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18세기의 조선사회가 지니고 있던 역사적 모순의 산물이었다. 어느 시기에 어떠한 사회현상이던간에 그 현상은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할 때 역사적 繼起性을 띠게 된다. 말하자면 19세기의 역사전개는 18 세기의 역사전개, 그리고 18세기의 역사전개는 17세기의 역사전개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는 절대연대상으로 숙종 26년(1700)에서 정조 23년(1799)까지이지만, 대체로 영·정조 때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성격을 한 때 '안정기', '부흥기', '또 하나의 전성기'로 이해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는 결코 안정된 사회는 아니었다. 양란으로 흐트러졌던 기존의 질서가 제대로 복구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변화의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기존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저변에서 꾸준히 추구되고 있었고, 기득권층의 이익에 대한 신진세력의 도전이 강인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즉 18세기의 조선사회는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변화가 한층 중폭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力動性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18세기의 사회를 역동성있게 움직이는 힘의 바탕이 되었다. 그런가하면 지배구조의 모순은 날로 경직화되어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소외계층을 확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본래 조선사회는 양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사회생활은 매우 제약받았다. 민중은 정치적으로 지배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신분적으 로 양반층에 억압받고 있었다. 그런데 강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봉건적 지배 체제는 이미 16세기 중엽 이래로 체제를 이끌던 힘이 약화되더니, 倭亂과 胡 亂을 겪으면서는 사회운영의 기본 질서였던 신분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였고. 지배이념으로서의 성리학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조선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였으며 사 회 전반에까지 확산된 것은 아니었다. 변화가 본격화한 것은 18세기에 이르 러서였다. 지배구조의 모순이 여러 방면에서 심하게 드러나면서 그러한 현실 을 묵과만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시기의 변화에서 주목 되었던 것은 기충민이 변화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시 민 중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기층민으로서의 농민이었다. 지배체제가 마 련한 모순구조 속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신음하던 농민들이 사회의 모순 을 깨닫기에 이른 것이다. 더 이상 봉건지배층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농민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들은 황 폐된 농촌에서 자신들이 당면한 생활조건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했다.

농민들은 농토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하면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방법을 개선하였는가 하면, 시장경제에 편승하여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자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도 했다. 한편, 농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농촌을 떠나야 했던 일부 농민들은 도회지에 모여 상공업 활동을 시도하거나, 포구, 장시, 광산 등지를 찾아 임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그

들의 삶은 평탄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봉건지배층의 가혹한 손길은 그들로 하여금 삶을 여유있게 지내도록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날이 가난에 쪼들리고 빚에 몰리게 했다. 이에 지금까지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체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거느리고 몰래 야반도주하여 고향을 떠나는 방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던 농민들은 두레와 같은 공동체 조직을 통해 유대감과 자율성을 높여가면서 생존의 응집력을 키웠고, 마침내 집권층의 독선과 탐관오리·악덕 지주의 탐학에 대하여 도전적 행동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힘겨운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는 流亡도 어찌보면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그것은 소극적 행동이었다. 이제 농민들은 종래의 소극적 자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변혁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민중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봉건적 수취체제에 대하여 避役 ・抗租・拒稅 등의 형태로 저항했는가 하면, 壁書・掛書・疏請 등의 방법으 로 지배체제의 모순과 탐관오리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심지어는 張吉山・邊 山群盗・戊申亂과 같이 무력을 동원하여 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廢四郡團 ・流團・才團・後西江團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춘 명화적, 즉 도적집단이 횡 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배층의 멸망을 예언하는 秘記나 圖讖說이 널리 유포 되었고, 미륵신앙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민중의 저항운동은 18세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봉건지배층의 구조적 모순을 배경으로 한 필연적 현상이었다. 특히 그 모순은 민중의 생존 권과 직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삶이 담겨져 있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18세기의 민중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바로 진단 할 수 없다. 즉 18세기의 민중의 동요는 기본적으로 당시 조선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던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18세기의 민중은 향촌에서, 도시에서 또는 농업적 측면에서, 상공업적 측면에서, 이 시기 사회 경제적 변화를 주목하고서 거기에서의 자신들의 사회적 ㆍ경제적 이익을 보다 분명히 자각하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각종 침탈에 맞서면서 도전적 존재 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점차 깨우치게 된 이 시기의 민중은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봉건적 질서에 유 리하게 편입되도록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 그들의 움직임은 의식의 수준이나 힘의 축적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외형상 群盜나 변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민중이 일정한 지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모순이 심화되고 변화가 추구되고 있던 18세기의 향촌사회였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도 향촌의 사회적·경제적 권한과 이익은 봉건지배층이 강인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중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깨야만 했다.

1) 민중세계의 각성

민중이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변혁의 주체로서 나서기 시작했다고 할 때, 그 첫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의식의 변화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의식은 확실히 종래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의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심화되고 있던 농민층의 분화, 즉 농촌사회의 동요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농촌사회의 동요는 크게 보아서 두 측면에서 야기되고 있었다. 즉 조선왕조가 재정기반을 위해 규정한 봉건적 수취체제의 한계와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봉건지배층의 횡포가 그 한 측면이었고, 또하나의 측면은 17세기 이래 두드러진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로의 편입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혹한 수취체제가 일차적으로 농촌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가혹한 수취체제로 인한 농민의 유망은 본래부터 간헐적으로 야기되고 있었는데, 18세기에 이르러는 자연재해의 빈발, 사회기강의 이완,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보다 조장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전후의 농촌사회의 동요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력의 획기적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활성화의 토대에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조건은 전자와는 달리 농민들로 하여금 힘의 축적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게 했고, 삶의 방향과 주체적 의지의 상관관계를 헤아려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은 민중세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깨우쳐 농민들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시켰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사회의 동요를

갈등 구조로 전화시키는데 작용하였던 것이다. 농민층의 분화라는 모습으로 보여진 농촌사회의 동요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토 지소유관계의 변화가 농민층의 분화를 촉발하였다. 본래 조선 초기의 토지소 유관계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토대로 하면서 科田法이란 토지분 급제에 의해 그 사적 소유를 일정하게 제약하고 있었다. 즉, 소유권의 측면 에서 지주전호제가 존재했는가 하면, 수조권의 측면에서 田主佃客制가 성립 되고 있었다.1) 그런데 16세기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은 제도적으로 소 멸되고 지주전호제가 지배적 생산관계로 발전해 갔다. 지주제는 양반ㆍ토호 등이 토지를 집중함에 따라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17세기에 이르면 농 법의 개량이나 농업 생산력의 발전 및 이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경영의 확대, 그리고 봉건적 지배층의 토지개간과 토지겸병에 의해 양적으로 지주제가 확 대되어 갔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신분제와 관련하여 인신적 지배·예속 관계를 내포하고 있던 기존의 봉건적 지주제가 신분질서의 동요. 유통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佃戶의 신분적 외피가 제거되고 경제적 관계에 의한 새로 운 지주제로 전개되어 갔다.2) 비특권적 서민지주에 의한 순수한 지주적 농 업경영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이후 더욱 심화되어 갔고 따라서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격차는 보다 현저해져 갔다. 토지는 극히 소수의 부유 층에 의해서 소유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갔고,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농민들 은 영세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가 없이 남의 땅을 소작해야 하는 無田農 民으로 전락해 갔다. 18세기 초반 토지 소유의 상황은 약 6%의 농가가 농토 의 약 44%를, 약 63%의 농가가 농토의 약 18%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 가 없는 농가도 전 농가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3) 18세기 후반 농촌의 실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던 朴趾源도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는 자는 열 사람 가운데 한두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

그런데 18세기 이래 토지소유관계의 변화는 이전 시기와 달리 상품화폐경

¹⁾ 李景植,《朝鮮前期 土地制度研究》(一潮閣, 1986), 94\.

²⁾ 李景植, 〈17世紀의 土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韓國史研究》9, 1973), 122쪽.

³⁾ 金容燮,《朝鮮後期 農業史研究》I(一潮閣, 1970), 202\.

⁴⁾ 朴趾源,《燕巖集》 권 16, 課農小抄 限民名田議.

제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종래의 토지소유 관계는 주로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또 정치적 권력의 확장을 위해 토지를 획득하였으나, 이 시기에 와서는 그보다는 농촌사회가 상품화폐 경제에 편입되는 분위기 속에서 화폐에 의해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를 정치적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보다는 경제적 이익, 화폐재산의 증식을 위해 구입했다. 5) 15세기의 농업 생산력 증대는 16세기 상품유통을 촉진시켰고, 17세기이래로 금속화폐가 유통되면서 그 경향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양반관료, 토호, 상인 등은 재화를 축적하였고, 그들은 축적된 재화의 많은부분을 수익성이 비교적 안정된 토지에 투자하였다. 특히 봉건지주층은 경쟁적으로 토지집적에 힘썼다. 봉건지주들은 勒買를 하지 않아도 토지를 쉽게 검병할 수 있었다. 당시 상품화폐경제가 전개되는 속에서 농민들은 경제가파탄하여 농토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주들은 쉽게 토지를 집적하였는데, 대지주는 전국에 그 이름을 떨칠 만큼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경상도의 崔氏와 전라도의 王氏는 萬石꾼으로 알려지고 있었다.6)

양반관료, 토호 등의 봉건지주뿐 아니라 상업활동으로 막대한 재화를 축적한 상인들도 토지집적에 힘썼다. 예컨대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던 松商은 향촌의 토호들과 결탁하여 토지를 겸병하여 대지주가 되기도 하였는데,7 이같은 사례는 송상의 경우만이아니었다. 토지의 상품화는 이 시기 이후 두드러진 사회현상의 하나였다.

부유층의 토지집적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농토로부터 배제되는 농민층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층은 이제 부농층과 빈농층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갔고, 그리하여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머슴이나 품팔이 등 농업노동자로서 농촌에 계속 머물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생산수단인 토지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도시·광산·포구 등으로 나가서 새 일자리를 찾아야했다. 농민층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져 간 것이다. 토지소유관계로 인한 농민

⁵⁾ 전석담·허종호·홍희유,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이성과 현실, 1989), 107쪽

⁶⁾ 丁若鏞,《與猶堂全書》 권 11, 田論.

^{7) 《}松商日記》을묘(1855) 7월 19일.

층의 분화는 지역차는 있었지만, 18세기에는 대체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농민층의 분화는 농업경영형태의 변화에 의해서도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각 산업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농업분야에서 두드러진모습을 보여 주었다. 농업분야에서의 새로운 모습은 경영형태의 변화였다. 예컨대 廣作이 행해지고 상품작물이 재배된 것이다. 그런데 그같은 농업분야에서의 변화는 생산력의 증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14·15세기에 이루어진 連作法의 일반화, 施肥法의 발달, 16세기의 수리시설의 개발은 생산력을 상당히 높여주었다.8) 18세기에 이르면 농법이 크게 달라지면서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농촌사회는 봉건지배층의 중농정책에 의해 그 동안 완만하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양란을 맞으면서 전국이 전장화되고 그리하여 농토의 대부분이 황폐해졌고, 그에 따라 농민층은 생업의 기반을 잃었다.⁹⁾ 이러한 상황은 농업에 그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던 봉건지배층에게는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서둘러 농경지의 확충에 나서 개간사업을 널리 장려하였다. 그러나 개간사업은 오히려 봉건지주층의 토지겸병과 지주세를 확대시켰을 뿐, 농민층은 오히려 소유지를 잃거나 감축당해야 했다.¹⁰⁾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즉 농법의 개량을 통하여 수확을 증대시킴으로써 활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농법의 개량은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두루 진행되었다. 논농사에서는 移秧法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갔고, 밭 농사에서는 作付體系가 개선되었다. 특히 이앙법의 발달은 농가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모판을 만들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이앙법은 조선 전기에도 경상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적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볍씨를 뿌린 땅에서 그대로

⁸⁾ 이태진, <14·5세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東洋學》6,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78), 337쪽.

^{9) 《}宣祖實錄》 권 140, 선조 34년 8월 무인.

¹⁰⁾ 李景植, 앞의 글(1973), 123쪽.

宋讚燮,〈17・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韓國史論》12, 서울大, 1985), 293쪽.

키우는 直播法이 일반적이었다. 이앙법에 의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내기철에 충분하게 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서 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좀처럼 채택하기가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정부에서는 가뭄의 피해를 우려하여 이앙법을 금지하였으나, 농민들은 袱와 같은 작은 규모의 수리시설을 개발하면서 이앙법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 오면 삼남지방의 경우거의 90%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앙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앙법은 직파법에비하여 김매기, 피사리 등에서 노동력을 덜어주었고, 단위 면적당 생산력을 크게 높여 주었다. 또 이앙법은 논농사에 있어서 벼와 보리의 二毛作을 가능하게 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었다.11) 발농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6세기 이래 다양한 쟁기가 개발되면서 땅을 깊이 파고 발두둑을 높이하여 이랑과 두둑에 각각 알맞은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체계의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畎種法이 널리 보급되어 갔다. 이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1년 2작, 2년 3작의 윤작체계가 정립되었고, 그에 따라서 토지생산성이 높아져 갔다.12)

농법의 변화는 생산력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광작이란 새로운 농업경영양식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이앙법의보급으로 노동력을 덜게 되면서 농민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종래보다 약 5배로 늘어났고, 단위 면적당 경작 노동력을 약 80% 가량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경작능력이 증대하면서 농민들은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게되었는데, 지주들은 토지 자체의 확대를 통해서, 자작농이나 소작농은 소작지 경영의 확대를 통해서 광작을 해나갔다. 직파법으로 10두락도 못짓던 농가에서 이앙법으로 20두락 내지는 40두락까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한다.13)

그러면 광작은 누구에 의해서 시도되었을까. 아마 광작을 처음 시도한 것

¹¹⁾ 金容燮,《朝鮮後期 農業史研究》Ⅱ(一潮閣, 1971), 34쪽.

¹²⁾ 金容燮, 위의 책, 117쪽.閔成基,《朝鮮農業史研究》(一潮閣, 1988), 169쪽.

¹³⁾ 宋贊植、〈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0), 107~118쪽.

은 직접 생산자인 농민, 즉 자작농 내지는 소작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작의 이로움, 즉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로움은 곧 지주층에 의해서도 파악되었고, 그리하여 광작운동의 주도권은 이내지주층, 특히 在地 지주층에게 넘어갔다. 재지 지주들은 종래에는 자기 소유토지의 대부분을 소작농에게 대여하면서 한편 일부 농토는 자기 소유의 노비나 머슴을 사역하여 직접 경작하였는데, 이제 노동생산성이 발전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자 소작농에게 대여하던 토지의 상당부분을 自耕地로 돌려 노비・머슴 등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고자 하였다. 그런데이는 지주에게는 소득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소작농민들은 그만큼 자신의 借耕地를 빼앗기는 것이었다. 지주와의 대립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소작농민들은 이제 그들 소작농민끼리 소작지를 확보하고자 경쟁관계에 돌입하기까지하였다. 그리하여 차경지마저 전부 상실하게 된 무전농민들은 농업노동자로서 계속 머물기도 하지만, 농촌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4)

농촌사회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보다 심하게 동요하였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들은 점차 소상품생산자로 전화되어 갔다. 15세기 후반 생겨난 장시는 18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또한 이 시기에는 교환수단으로 금속화폐가 널리 통용되고도 있었다.15) 이같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상품화할 수 있는 농업생산품의 출하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인삼, 담배, 목화, 채소 등의 작물이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되어 갔다. 생산물의 교환이 점차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면서 화폐는 누구에게나 긴요한 것으로 되었다. 지주나 부유한 농민은 물론 가난한 농민들도 어떠한 물건이던지 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화폐취득의 욕망이 컸다. 그리하여농민들은 자기의 생산물을 시장을 목표로 하여 상품으로 생산하고자 하였다.게다가 장시를 통한 거래에서 이득이 있음을 알게 된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16) 이와 같이 상품화폐경제의

^{14) 《}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8월 24일.

¹⁵⁾ 전석담・허종호・홍희유, 앞의 책, 65쪽. 元裕漢,《朝鮮後期 貨幣史研究》(韓國研究院, 1975), 104쪽.

¹⁶⁾ 전석담·허종호·홍희유, 위의 책, 136쪽.

발달은 종래의 봉건적 경제질서를 해체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농민층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즉,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일부 농민들은 재화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상업적 농업을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컸고, 비록 이윤을 추구했다고 하여도 이를 가로채는 봉건지배층의 탐학으로 인하여 파산의 길을 면할 수 없었다. 당시 농민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혹한 것이었다. 부세 외에도 관혼상제 등의비용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산을 전당잡히고 돈을 빌려써야 했기 때문에 차趾源은 해마다 땅을 팔아버리는 농민이 10에 7~8이나 된다고 하였다.17) 농촌사회는 점차 부농과 빈농으로 양극화되고 있었다.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농법을 개량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그 것을 유익하게 전개한 것은 일부 농민층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몰락해 갔다. 더구나 농촌사회가 상품화폐경제에 편입되면서 농민의 계급분화는 보다 확연히 나타났고, 그러한 속에서 드러나는 봉건적 사회구성의 모순과 그 모순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일부 농민들은 점차 삶의 방향에 대하여 주체적 의지를 갖게 되었다.

민중세계가 서서히 각성되고 있었지만, 봉건지배층의 현실감각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었다. 사회체제가 동요하는 속에서도 지배층으로서의 양반관료들은 여전히 미봉적 대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배층과 민중 사이의 간격은 날로 커갔다. 그 간격은 수취체제의 미봉적 개편에 의해서 한 때 조정되는 듯 하였으나, 모순을 본질적으로 시정하고자한 것이 아니어서 18세기 이후 다시금 농촌경제를 악화시켰다. 농촌사회의동요는 수취체제의 파탄에 의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왕조는 거의 만성적으로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공적 경제기반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래로 토지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양반관료들의 농장이 도처에 생겨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봉건국가의 공적 경제기반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사회변동에 따라 기강이 동요하면서 국가의 수취체제도 정상

¹⁷⁾ 朴趾源、《燕巖集》 권 16, 課農小抄 限民名田議.

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중간에서 누탈되어 국가의 재정수입은 날로 감축 되어 갔다. 그 상황은 양란을 겪으면서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 히 7년간에 걸쳐 전국을 휩쓴 왜란은 농촌사회를 황폐화시켰고, 각 고을의 토지문서도 상당수가 소실되어 선조 34년(1601) 국가가 파악한 전국의 토지 면적은 30만 결 정도였다.18) 이에 왜란이 끝나고 나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양 전사업을 실시하여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쉽게 국가재정은 호전되지 않았다. 인조 2년(1624) 호조의 보고에 의하면, 녹 봉으로 관료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곡이 쌀 10.500여 석. 콩 4.600석인데. 당 시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것은 쌀 880석, 콩 230석뿐이었다고 한다.19) 국가 의 재정형편이 이와 같이 파산 직전에 있었건만, 5군영의 설치 등 군비 증강 에 따른 국방비의 증대와 국가 기구의 증설로 인한 행정비의 증대로 당시 국가의 경비는 오히려 팽창하는 추세에 있었다. 17세기 초 국가의 재정은 실 로 왕조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 었다. 달리 재정수입의 방도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던 봉건국가는 당면한 재 정 위기를 賦稅의 징수로만 타개하고자 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양전을 시 도하고 농민에게서 가외의 잡다한 명목으로 부세를 징수하였다.20)

그러나 당시 농촌의 현실은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 양반관료들의 토지겸병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농토를 잃게 된 농민들이 다수 생겨났고, 봉건지배층의 수탈이 가중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농토에서 떠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여 농민으로부터 부세의 징수에 철저하였다. 田稅의 경우법제적으로는 1결당 4두씩이었으나, 17세기 이래 농민들에게 부과된 세목은삼수미, 역가미, 결미, 가등미, 작지미 등 잡다한 부가세가 있었고, 그 액수도1결당 25두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가볍게 보이는 부담이었다. 17세기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군포 징수의 문제는 결국 그 폐단으로 均役法이 시행되었지만, 당시 군포 때문에 파산하는 농민들 가운데

^{18) 《}宣祖實錄》 권 140, 선조 34년 8월 무인.

^{19) 《}仁祖實錄》 권 4, 인조 2년 정월 기미.

²⁰⁾ 崔完基,〈大同法 實施의 影響〉(《國史館論叢》12, 1990), 217쪽.

는 비단 가난한 농민들뿐만이 아니었다. 한 집이 파산되어 유망하면 인정·족징이 가해지기 때문에 끝내는 온 마을이 연쇄반응을 일으켰다.21) 한편 당시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는데, 그들이 지주에게 부담하는 소작료 역시 매우 과다하여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병작농민은 명색이 半作이라 하였지만, 때와 곳에 따라서는 1년에 농사지은 수확 중에서 70% 이상을 고정적으로 수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22) 때로는 지주가 부담해야 할 전세까지 부담해야 했고, 그리고 정부의 각종 요역은 농민을 극도의 빈궁 상태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재난이 유난히 심했는데, 정부와 지주들은 아무리 흉년이 심하고 질병이 만연되어도 부세 징수에 가혹하였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수탈의 가혹성은 세액이 과다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과의 대상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켜 이동을 억제하였으니, 號牌法·五家作統法 등은 그러한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23) 그리하여 농민들은 대를 이어가며 한 곳에 살면서 지급자족적인 봉건경제권에 묶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사회체제가 어떠하든 간에 한 사회의 통치자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한계 이상으로 생존문제에 제약을 가한다면, 그 구성원은 마침내 그 사회체제에서 이탈하게 된다. 생존능력 이상의 제약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순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지배체제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던 조선사회의 농민들이었지만, 그들이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수탈이 강화되자, 마침내 농민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체제에서 이탈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부세의과중한 부담과 봉건지배층의 무도한 억압을 견딜 수 없게 된 농민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을 떠나 사방으로 유리하였다. 농민층의 유망은 이전 시기에도 널리 나타나고 있었지만, 17세기에는 그 양상이 심각하였다. 인조 때이조판서를 지낸 趙翼의 보고에 의하면, 가난한 농민들은 거의 모두 파산하

²¹⁾ 鄭演植、〈17・18세기 良役均役化政策의 推移〉(《韓國史論》 13, 서울大, 1985), 137쪽.

²²⁾ 전석담・허종호・홍희유, 앞의 책, 139쪽.

^{23) 《}仁祖實錄》 권 9, 인조 3년 7월 경신. 《孝宗實錄》 권 2, 효종 즉위년 11월 병인.

여 생업을 잃고 타향을 전전하다가 마침내는 토호의 소작인이 되어 겨우 호구를 면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²⁴⁾ 문제는 유망민 당사자에만 그친것이 아니었다. 봉건지배층은 유망민의 부세 부담을 남아있는 이웃, 친족에게 전가시키니 그들도 견디지 못하고 유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현실은 농민층 자체에게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수입에 있어서 근간이었던 부세수취 는 농민층의 토지에의 긴박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16, 17세기를 통한 농 민층의 광범위한 토지 이탈현상은 최소한도나마 그것의 유지를 곤란하게 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건지배층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농촌사회의 파산을 예 방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도 강구해야 했으니, 이에 실시된 것이 大同法과 均 役法이었다. 특히 대동법은 위기에 봉착한 국가재정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아울러 봉건적 질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배구조의 재편성이라 하겠다.25) 따라서 잠시 안정을 보이는 듯하던 농촌사회였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8세기에 이르러서도 농촌 사회의 동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농민들의 의식이 각성되면서 그 양상은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화되 어 갔다. 농민들의 일부는 봉건국가와 봉건지배층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갔던 것이다. 그들은 조선왕조가 내세웠던 農本政策이 봉건지 배층의 정치적 구호였다는 것과, 따라서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허구임을 점 차 깨닫기에 이르렀다.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각 계층간의 갈등 이 격렬해지고, 마침내 폭발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갈등은 우선 무전농민ㆍ 영세작인 들에 의해 야기되었다. 토지의 상품화에서건 가혹한 수취체제에서 건 토지를 상실하고 몰락해 갔던 빈농들은 그들이 대대로 경작해 오던 토지 로부터 배제되면서 당시의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심과 아울러 현 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구조가 갖 는 모순에 대해 인식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토호지주의 횡포와 봉건지배층

²⁴⁾ 趙 翼,《浦渚集》 권 2, 因求言論時事疏.

²⁵⁾ 崔完基, 앞의 글, 207쪽.

의 수탈에 의해 몰락하였기 때문에 우선 토호지주나 봉건지배층에 대해 적 대의식을 표명하였다.²⁶⁾

물론 이 시기 몰락농민의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다수가 그들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강인한 봉건질서 앞에서 별다른 묘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일부는 개성이 강하여 매우 비판적이기도 했으니, 민중의 동요는 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는 속에서 지배층의 탐학과 횡포가 날로 농촌경제를 파탄시켰는데, 여기에 더하여 질병, 기근과 같은 자연적 재해가 겹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곤궁해졌다. 따라서 자연적 재해도 민중이 동요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물론 홍수나 가뭄, 전염병의 유행 등 이 민중운동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재해들은 지배층에 대한 불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무능이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는 재해가 유난히도 심했다.27) 영조 9년(1733)에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을 엄 습한 기근으로 연인원 40만 명의 飢民과 13,00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 다. 영조 39년 호남지방의 기근에서는 50만 명에 가까운 기민이 생겨났다. 그리고 기근과 함께 발생한 전염병은 기근으로 인한 피해를 심화시켰다. 콜 레라·장티푸스·천연두 등으로 알려진 전염병이 유행하면 숱한 사망자가 생겨났다. 18세기 전반은 전염병이 특히 맹위를 떨쳤는데, 영조 20년에는 전 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6~7만 명이라 하였고, 영조 25년에는 50~60만명이 전염병으로 병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민들이 서로 를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28) 실로 조선 후기 민중세계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 날로 커 갔다. 사회의

²⁶⁾ 정창렬,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정치의식〉(《韓國人의 生活意識과 民衆藝術》, 成 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4), 53쪽.

²⁷⁾ 趙 珖, 〈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19世紀 韓國 傳統社會의 變貌의 民衆 意識》,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185~203\(\frac{2}{2}\).

^{28) 《}英祖實錄》 권 58, 영조 19년 11월 계해.

분위기는 주변에서 그들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면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중세계의 각성은 18세기에 이르면 도처에 개설되어 전국적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던 場市나 浦口 자체에 의해서도 조장되었다. 이들 장소는 물화의교역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곳이었고, 그 곳에 있던 객주나 주점에 머무는 상인, 여행자들을 통해 곳곳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정보교환 또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29) 장시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대화와 주연을 하는 가운데 사회의식을 키웠고, 판소리・타령・잡가 등을 통해 양반들의 비행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장시나 포구는 괘서나 벽서의 형태로 사회의 불평, 불만을 품고 있거나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18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괘서나 벽서는 일종의 대자보로서 민심을 선동하고 불만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30) 이처럼 장시나 포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민중을 일깨우는 장소로, 나아가 민중운동의 장소로이용되기도 하였다. 정부로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장시나 포구에 관리를 보내 민심의 동태를 관찰하거나 파악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한글소설이나 판소리가 널리 보급되면서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널리 읽혀진 許筠의 《洪吉童傳》은서일 차대의 철폐와 탐관오리의 웅징을 주장하는 등 시대상황을 날카롭게비판하면서 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강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문확작품 중에서 최대의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춘향전》은 원래 판소리의 형태로 전해졌는데, 여기에서는 상민이나 천민도 양반과 동등한인격의 소유자임을 밝히고 있다. 사람들은 춘향이 수령에 대해 항거함을 통해서 평등의 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고, 춘향이 자기가 추구한 사랑을 실현하는 결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민중은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것인지도 미숙하나마 가늠하기에 이르렀다.

²⁹⁾ 金大吉, 〈朝鮮後期 場市의 社會的 機能〉(《國史館論叢》37, 1992), 185쪽.

³⁰⁾ 李相培、〈英祖朝 尹志掛書事件과 政局의 動向〉(《韓國史研究》 76, 1992), 72쪽.

2) 유대관계의 강화

민중이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불만을 갖고, 나아가 봉건지배층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봉건적 사회구조가 갖는 모순을 각성했다고 하여도, 그들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때가 일렀다. 봉건적 질서가 완강히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억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주체적 역량이 성숙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 보여진 민중세계의 각성은 다음 시기에 있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중운동의 사회적 토대가 되었다. 민중세계의 각성은 이 시기에는 행동으로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중의 저항의식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변혁의 주체로서 나서기 위한 틀을 예비시키고 있었다. 고통에 허덕이던 민중은 개별적이고 간헐적인 抗租나 掛書 또는 群盜나 變亂에의 참여를 통해 현실세계를 비판하고 탈출해 보고자하였다.

한편, 그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하고자했다. 개별적이고 간헐적인 힘을 강인하게 집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공동체적조직인 두레나 契가 그러한 시도의 결과로, 이들 조직은 민중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시킴에 있어 중요한 토대로 역할하였다. 민중은 자율적으로 마련한이들 조직을 통해 봉건지배층의 통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니, 이들 조직은 새로운 질서를 의도한 민중의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기도 했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래 이앙법의 보급을 계기로 대두한 두레는 농민들의 향상된 경제력을 발판으로 조직의 구성에서 지주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였으니, 강인한 조직력과 자율성을 토대로 그들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³¹⁾ 따라서 그 발달은 민중의 삶에 장애가 되고 있던 봉건적 질서를 깨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두레가 생겨나기에 앞서 농촌사회에는 香徒라는 지역공동체가 있었다. 고

³¹⁾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문제와 시각》 13, 문학과 지성사, 1985), 225쪽.

려말 休閑法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촌락 단위로 그 규모가 작아진 향도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벼농사에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황두라고도 불리는 향도는 김매기에 능한 장정 20~3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능률적이고 규율적이었다.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는 수리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벼농사는 直播法이 일반적이었다. 향도는 곧 직파법에서 김매기에 동원된 공동 노동조직이었다. 그러한 향도가 이앙법이 보급되어 보다 강도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면서 공고한 결속력을 갖는 두레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32) 즉, 자체의 조직적 개성이 강한 인위적 두레가 나타나면서 종래의 자연촌락에 토대한 향도와 같은 공동체적 질서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두레는 이모작이 보급되면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두레는 농사작업을 공동노동에 의해 수행하면서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켰는데, 農樂과 農旗는 규율적 행동과 유대관계를 조장하였다. 두레의 조직은 한 마을의 16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균 20~30명으로 이루어졌다. 큰 두레는 약 50명으로 구성되는경우도 있었다. 두레의 구성원은 흔히 두레꾼, 두레패라고 불렸다. 두레는 반드시 자연촌락인 마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행정단위로서의 洞과 里는 두레조직의 단위가 아니었다. 두레 가입에는 전체적, 의무적 성격이 있어 공동체적 구속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양반이나 지주 등 비생산 노동계급은 두레에서 배제되었으며, 대신 머슴을 두레에 참가시켰다. 즉, 두레는 생산노동에종사하는 건실한 농민으로 구성된 민중의 작업 공동체였다. 두레는 반드시농기와 농악이 있었는데, 농기는 두레의 상징으로 농민의 자부심과 단결을나타내는 표상이었다. 그리고 농악은 공동노동에서의 노동능률을 높이고 노동을 즐겁게 하며, 두레를 작업공동체로 단결시키는데 기능하였다.

두레가 이와 같이 공고한 결속력과 농민의식의 함양에 기능하였다고 할때, 농민의 지위와 역량은 이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기능은 농촌사회가 동요하고 농민층이 분화하는 갈등구조 속에서 보다 강렬하게 발휘하여, 농민들이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의식하고 개척해 나감에 있어 역동

³²⁾ 李泰鎭, 〈17·8세기 香徒조직의 分化와 두레 발생〉(《震檀學報》67, 1989), 21쪽.

적으로 활기를 부여해 주었다.

정부에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두레의 동태를 주목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영조 13년(1737) 湖南別遣御使로 임명된 元景夏는 두레의 농기와 농악기가 민중의 소요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여 압수한 바 있다.33) 이 때는 戊申 쮒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때이어서 각지의 민심이 흉흉한 상황이기도했다. 그렇다고 하여도 조직력, 자율성, 규율성이 강한 조직체가 형성되어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시기 민중의 지위를 충분히 가늠하게 해준다.

논농사에서 두레를 이용하여 공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밭농사에서는 품앗이라는 공동노동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³⁴⁾ 품앗이는 소겨리, 들계등의 이름으로 15세기 이래 존속되고 있었는데, 소겨리는 밭갈이를 함에 있어 소를 가진 집을 중심으로 5호 정도가 하나의 노동조직을 이루었다. 그리고 들계는 김매기에 있어서 함께 노동하는 조직으로, 자연촌락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큰 마을에는 4~5개의 들계가 있는 경우도적지 않았다. 이들 품앗이 조직도 두레와 마찬가지로 공동노동조직으로서, 노동의 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조직력이나 자율성에 있어서는 두레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들 조직 역시 농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의식을 키우는데 나름대로 이바지하고 있었다.

두레나 품앗이에 의해 노동력이 집약되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그러한 농민층의 이익을 분점하고자 국가가 수취체제를 里·洞 단위의 共同納 제도로 전환하여 간 것이 18세기였다. 이에 농민들은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자 각종의 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조직체인 계는 농민간의 상부상조를 위해서도 요청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사회의식의 결집으로서도 활용되었다. 35) 17세기 이래 농민층의 분화로 인해 유민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들은 도성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자신들이 대를 이어 살던 농촌에서 쫓겨나야 했던 운명이어서 지배구조에 매우 저항적이었다. 그리하여 劍契, 殺主契, 香徒契 등의 조직을 만들어 잦은 정변 속에서 특정한 정파의 무력 행사에

^{33) 《}承政院日記》 881책, 영조 14년 11월 17일.

³⁴⁾ 李泰鎭, 앞의 글(1989), 14쪽.

³⁵⁾ 金仁杰, 〈朝鮮後期 鄕村社會 統制策의 위기〉(《震檀學報》 58, 1984), 142쪽.

이용되기도 하였다.³⁶⁾ 이와 같이 18세기에는 두레뿐 아니라 계와 같은 조직도 성행하여 민중의 결속을 다졌다.

두레나 품앗이 또는 계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결집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해나갔다면, 그것들은 곧 농민들이 대다수인 민중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심점역할을 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 민중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鑑訣思想이었다. 鄭鑑錄으로 대변되는 감결사상은 18세기 이래 특히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지배체제의 모순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지배층은 모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기능을 상실하고, 그것은 민중세계와는 거리가 먼 관념세계였다.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속에서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감결사상이 유행하였다. 감결사상의 현실 부정적 성격은 당시 민중세계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감결사상은 현세에 대한 강한 거부의식과 더불어 理想鄕에 대한 추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37) 그리고 감결사상에서는 현세의 질곡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이상향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존재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조 24년 (1748)의 李之署 事件, 영조 36년의 愼後一 사건, 영조 39년의 宋永興 사건, 영조 40년의 李達孫 사건, 영조 44년의 黃應直 사건 등은 모두 감결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정조 6년(1782)의 文仁邦·李京來 사건에서는 정감록이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38)

감결사상과 더불어 미륵신앙, 도교사상 등도 민중세계를 동요시켰다. 17세기 후반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륵신앙운동은 영조 13년 황해도·강원도·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정계에 문제화된 바 있었는데, 기존의 질서나

³⁶⁾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23~29\.

³⁷⁾ 趙 珖, 〈朝鮮後期 思想界의 轉換期的 特性〉(《韓國史 轉換期의 問題들》, 지식 산업사, 1993), 167쪽.

³⁸⁾ 高成勳,《朝鮮後期 變亂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149~155쪽.

이념체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39) 그리고 일찍부터 민간신앙으로 전승되어 온 도교사상도 반체제적 사상이었는데, 정조 9년(1785) 洪福榮·李瑮 등은 정 감록과 함께 도교를 배경으로 조선왕조의 전복을 시도하였다.40) 이러한 민간신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는 않았지만, 고통과 불안에 허덕이는 민중세계를 현혹하면서 사회 저변으로 널리 확산되어 갔다. 즉, 이는 당시 민중의 정신적 피난처 구실을 하였으니, 민중은 감결사상 등을 통하여 저항력을 응집시켜 나갔던 것이다. 민중을 지배하고 있던 이같은 민간사상은 민중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 민중세계의 동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상치 않았다. 봉건적 사 회구조가 모순을 드러내는 속에서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되어 사회변동이 기 층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18세기에는 농민층의 분화가 본격화하 면서 몰락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은 현실세계의 모순을 직시하기에 이르 렀고, 나아가 두레나 감결사상 등을 통해 응집력을 강화시켜 가면서 공동체 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를 주동할 힘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물 론 그들이 가지는 주체적 의식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 전 반에 잉태되고 있는 봉건질서에 대한 저항의식은 어느 시기에 이르면 결집 되어 분출되게끔 갈등의 앙금은 나날이 보다 더 축적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향촌사회를 신분제적 지배를 통해 장악해 왔던 봉 건지배층, 즉 在地士族의 지배력도 동요를 일으켰으니, 그것은 민중세계를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에 봉건지배층은 향촌사회를 통제하고자 서원, 향약, 洞契의 기능을 강화해 보 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 그것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같은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한편에서 鄕權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잔 반, 중인, 서얼, 노비, 농민 등 각계층의 동향 역시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 었다.

³⁹⁾ 鄭奭鍾、〈朝鮮後期 肅宗年間의 彌勒信仰과 社會運動〉(《韓沽劢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지식산업사, 1981), 430쪽.

^{40) 《}正祖實錄》 권 19, 정조 9년 3월 기유.

3) 향권의 추이

조선시대 농민의 본거지인 향촌은 수십 호의 자연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각 촌락에는 班村・良村의 구분이 있기도 했지만, 대개 두서너 씨족이 서로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양반ㆍ평민ㆍ노비 등이 섞여 살았다. 이러한 향 촌사회를 지배해 온 것은 이른바 兩班社會라는 호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반, 즉 士族이었다. 그들은 향촌사회에서 경제적으로는 지주로, 사회적으로 는 양반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세기 후반 사람들이 중앙 의 정치무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 지위가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사족일지라도 그들은 서원이나 향약ㆍ향회 또는 동계를 토대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족들은 불안정한 농촌경제를 향 약이나 동계를 통해 안정시키고자 하면서 농민들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사족들은 鄕案의 작성, 鄕會의 운영을 통해 스스로의 자치권을 신장시켜 갔고 때로는 수령과 대등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굳 혀갔다.44) 물론 지금까지 농민에 대하여 나름대로 행세하고 있던 吏族이나 국가권력의 대행자인 守令의 견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사족들의 향촌사회지배는 서원과 향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17세 기 후반까지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그러한 사족지배체제는 약화되어 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의 사회변동에 토대하였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 폐경제의 보급으로 농촌사회가 동요하고, 그리하여 농민층의 계급분화가 촉진되는 속에서 토지와 노비를 토대로 구축되었던 사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동요된 것이다. 그리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부세의 金納化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는 사족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도 부세를 수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족과의 협조관계에 더 이상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족들의 향촌사회에서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

⁴⁴⁾ 金仁杰, 〈朝鮮後期 鄕權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韓國文化》2, 서울大 1981), 173쪽.

용하였다. 이에 사족들은 종래의 신분적 지배를 관철하기 위하여 鄕案을 중수하고 향약의 실시를 다시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족의 신분적 지배를 상징하는 향안은 新鄕의 도전에 의해 18세기 중엽에 이르러는 파기되었으며, 향약 실시도 수령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45)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행사하고 있던 지배력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후 향촌사회는 官의 일방적 통제하에 놓이게되었다.

사족지배체제의 약화는 신분제의 동요과정에서 양적으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지사족의 지위는 본래 경제적 위치보다도 신분적 특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었다. 신분제는 봉건지배층과 국가의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성립되었다. 조선사회는 지주제를 경제적 토대로 하면서 신분제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한 봉건사회였다. 조선사회는 지주적 토지소유를 부정해 본 적이 없고, 마찬가지로 신분직역제를 포기한 적도 없었다.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해에 일정한 제동을 가한 적은 있었지만, 지배층은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준수하기 위해 호적법을 강화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틀을 관철시켜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래 지금까지의 봉건적 사회구성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계급구조가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분별 구성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져 갔다.

조선 후기 신분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호적대장의 분석에 의하면 각지역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양반호구는 크게 늘어나고 노비호구는 격감하고 있다. 경상도 울산지역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영조 5년(1729)에 양반호 26.3%, 상민호 59.8%, 노비호 13.9%이던 구성비율이 영조 41년에는 양반호 41.9%, 상민호 57.0%, 노비호 2.0%로 달라지고 있고,46) 경상도 단성지역의 경우는 숙종 43년(1717)에 양반호 19.9%, 상민호 52.5%, 노비호 27.6%의 구성비율이 정조 10년(1786)에는 양반호 32.2%, 상민호 59.0%, 노비호 8.8%로 달라지고 있었다.47) 이같은 경향은 19세기에 이르면 더욱 심해지고 있다. 17

⁴⁵⁾ 金仁杰, 〈조선후기 鄕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土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548쪽.

⁴⁶⁾ 鄭奭鍾, 앞의 책, 248쪽.

세기까지만 해도 10%를 넘지 않던 양반의 신분구성비가 이와 같이 격증하고 노비호구가 격감해 갔음은 전통적인 신분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된 당시의 사정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제의 동요는 신분상승운동에 의한 결과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일정하게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를 바탕으로 하여 상민, 노비들이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신분상승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가도 재정적 위기 속에서 신분제를부정함이 없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분상승을 허용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었다. 이른바 納聚策이 그 징표였다.48) 그리하여 농민들은 합법적・비합법적인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신분의 상승을 꾀하였다. 신분의 상승은 지위를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쏹의 부담을 모면시켜 주었기 때문이다.요컨대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신분제 동요는 2중적 계기와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한편으로는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농민층의 내재적 성장으로 제기되는 봉건질서의 붕괴과정을 표현해주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처한 봉건지배층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사회정책의한 소산이었다.49) 신분제 자체가 무력화되고 신분질서가 허구화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군림하던 사족의 권위는 빛을 잃었고, 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향혼질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향촌사회의 권력구조는 수령과 이향을 중심으로 하여 관의 주도하에 재편되어 갔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재지사족들이 지금까지 장악해 왔던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권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50) 지금까지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들이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鄉會를 통해서였다. 향회는 글자 그대로 한 고을의 모임이나, 그것은 신분적으로 양반에 속하는 봉건지배층의 집합이었다. 그것은 16세기 이래 사족들이 기존의 鄕規에 성리학적 규범을 가미하여 발전시킨 향약의 보급과 더불어 활성화되었다. 즉 성리

⁴⁷⁾ 金錫禧・朴容淑、〈18世紀 農村의 社會構造〉(《釜大史學》3, 1979), 35쪽.

⁴⁸⁾ 金泳謨、〈朝鮮後期 身分構造의 그 變動〉(《東方學志》 26, 1981).

⁴⁹⁾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史學研究》15, 1963), 48쪽.

⁵⁰⁾ 金仁杰, 앞의 글(1981).

학을 이념적 무기로 하던 사족들이 一鄉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본질적 의도가 있던 것이 향회의 발족이었다.51) 따라서 향회가 추구하는 바는 향약의 덕속과 거의 다를 바 없었으니, 시기와 지역에따라서 형식이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겠으나 궁극적 목표는 유교적 이념의 실천에 있었다.

향촌의 교화와 항풍의 斜正을 명목으로 한 향회를 통해서 사족들은 서로 간의 결속을 꾀하면서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서들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향회에서는 각종의 규제조항, 예컨대 立議・約束・鄕規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실시는 물론 관과의 적절한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향회에서는 鄕內의 여러 일들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향안에 등록할 자를 결정하고, 수령의 자문기구인 鄕廳에서 일할 座首・別監 등향임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봉건적 질서에 어긋나는 제반 행위를 적발, 留鄕所나 관으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자를 포상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재지사족은 관과의 유착 속에서 향회를 통해 향촌사회의 권력기구를 장악하고 향촌의 이서와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현물납으로 부세가 징수되던 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와 그 안에서의 지배계급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재지사족의 물적 토대가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회의 구심체는 향안이었다. 향안은 원래 재지 品官의 명단이었으나, 17세기 향안이 재작성되는 속에서 內外鄉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 入錄될 수 있는 폐쇄적인 재지사족의 명단으로서 개념화되고 있다. 즉 재지사족의 公論에 따라 작성된, 말하자면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를 드러내주는 상징이었다. 재지사족은 이 향안을 기반으로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서 향회를 구성 운영하였던 것이다.

향안의 위치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향안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신중함이 요청되었다. 그것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와 관계가 깊다고 할 때는 더욱 그

⁵¹⁾ 金仁杰, 앞의 글(1983).

러하였다. 따라서 향안은 신분적 폐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향안에 입록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사족이어야 하며, 그도 친족·외족·처족에 모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 했다. 그리고 향안은 한 고을 재지사족의 공론에 의해 작성되었으니, 즉 향안의 작성은 그 지방 지배세력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향촌의 여론이 분열될 때 향안은 폐기될 소지도 있었다. 이같은 향안의 기능은 한마디로 재지사족을 결속시키고 향촌사회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족중심체제를 계속 유지시킴에 있었다.

그러나 향회 · 향안을 통해서 재지사족들이 지배구조를 계속 관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18세기에 이르러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농민층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농민층에 대한 지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 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사족들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는 한편으로 신분질서 가 크게 동요되어 사족지배체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 다. 향회 · 향안의 성격이 변모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움직임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사족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 다.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 확실한 권위의 근거가 없이 양반 신분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향안을 근거처로 삼았으니, 예컨대 서얼・부농층 등이 수령과 결탁하여 新鄕으로 등장한 것이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누구 든지 일정한 돈만 있으면 향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자들은 기존 의 사족과는 물론 신분적 계통이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향안을 통해 구래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긍심이 강한 기존의 재지사족은 향안 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향안에의 입록을 기피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로 院案을 만들어 서원을 그들의 근거처로 삼기도 했다. 향안 의 권위를 계속 지키려는 舊鄕들은 영조 말기 庶孽通淸 때도 서얼의 향안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52) 이에 신향은 향안의 폐쇄성에 도전하여 신ㆍ구 향 사이에 鄕戰이 발생하기도 했다. 둘째 정부의 對地主政策도 향안의 기능 변화에 일정하게 작용하였다. 즉, 사족들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새롭게 경제력을 지닌 부민층이 성장해 나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그 대행자로서의

^{52) 《}英祖實錄》 권 119, 영조 48년 12월 무자.

수령은 새로운 동반자로서 부민층을 향촌사회 권력구조 안에 끌어들이게 되 었다. 그것은 부세정책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53) 조선 후기 부세정책의 특 징은 모든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또 摠額制라 하여 공동납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大同法과 均 役法이 전자의 경향이라면, 比摠制와 里定制는 후자의 모습이었다. 향회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후자의 특징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 장받기 위하여 부세를 총액제로 수취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총액제 실시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겠지만. 그러나 그 같은 부세정책은 향촌사회 여러 세력간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심화시켰다. 왜 냐하면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부세수입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다고 하여도, 농민층의 분해가 가속화되어 더 이상 농민층의 유망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납세자의 절대부족으로 총액이 결코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세수취의 책임을 맡고 있던 수령은 어떠한 형태로든 부농층을 납세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했고. 또한 그는 형식적으로라 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때 수령의 입장에서는 향회를 적절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였다. 그리하여 향회의 구성원은 다양해졌다. 부세문제가 향회에서 논의되면서 각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 였다. 그 과정에서 향회는 수령에 의해 조종되어 수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 켜 주는 선으로 그 역할이 저하되어 갔다. 재지사족의 권위를 상징하던 향회 의 본래 의미는 크게 탈색되고 있었다. 기존의 향안은 18세기 중엽을 전후하 여 사족 내부의 분열과 향안 기능의 변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다. 또 19세기 초반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은 거 의 소멸된 것이었다. 향회·향안의 성격 변화로 인하여 재지사족은 향회·향 안을 더 이상 그들의 무기로 삼지 않았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향권은 鄕 任・面任・吏胥들,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면서 향회를 조종하던 수령에 의해 천단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新鄕이 향권을 장악하여 갔다고 하더라 도 아직은 신향이 舊鄕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

⁵³⁾ 金仁杰, 〈朝鮮後期 社會經濟의 發展과 農民抗爭〉(《韓國史의 研究》, 서울大, 1989), 205~206쪽.

기의 향권변동은 유동적이었다. 분명한 것은 재지사족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향소의 직임을 둘러싸고 유향이 분기되며, 그 과정에서 향족이 새로이 성립되어 갔고, 수령권이 강화되어 새로운 面里編制가 실시되었는데 그것은 역으로 재지사족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54)이 때에 면임·이임 등이 향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그들 역시 새로이 성장한 세력으로서 사회변혁운동에서 디딤돌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는 재지사족의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얼·부농·이서 등 새로이 성장한 사회세력들이 향권을 장악하고자 시도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형세를 직시하고 있던 국가는 국가대로 향촌사회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것이 부세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각 계층간의 갈등이 표출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 에서 향회에 참여하고 있던 새로운 계층의 입장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

4) 사회세력의 동향

18세기 후반 향촌사회에서 기존세력과 신진세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향권의 향배가 재지사족이나 서얼·부민 등에게는 매우 예민한 관심사였지만, 민중에게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심각한 관심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회가 일반 농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일을 처리하면서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향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민에 한정되었고, 부민의 이해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민과 부민의 이해는 서로 모순되었으며, 더구나 이 시기에는 향회가 부세수취를 위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수령의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즉 향회는 다만 민심을 탐지하는 여론 수집 기구에 불과하였다. 향회에 일반 농민들도 참여하여 기층사회의성장한 힘이 안으로 결집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다. 민중운동 과정에서 농민 동원의 한 형태로 향회가 기능하는 것도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55)

⁵⁴⁾ 金俊亨, 〈18世紀 里定法의 展開〉(《震檀學報》 58, 1984), 95쪽. 金仁杰, 앞의 글(1981), 180쪽.

물론 18세기 향촌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일반 민중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향권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일련의 동요 속에서 봉건지배층의 절대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전략되었고, 그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모습이민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민중으로 하여금 그 동안 사회경제적변동 속에서 내면적으로 육성되어 온 사회의식을 점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두레나 계와 같은 조직을 통해 다져온 유대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규격화된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향권에서배제된 재지사족은 17세기 후반 이래 중앙정계의 격렬한 정쟁과정에서 몰락한 양반관료와 더불어 殘班이란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 기층사회와 유기적관련을 가지면서 민중을 각성하고 자극하였으니,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반체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즉 기층사회의변동에 대응하는 상층사회의 변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변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같은 사회변동은 당시의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이 시기의 사회변동은 지배세력의 물적・인적 기반까지 동요시키며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특정의 사회세력은 기층사회의 움직임을 정계와 연계시키면서 변혁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변란이란 모습으로 나타났다. 변란이란 체제 자체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 물리력으로 집권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자 봉기하는 사태를 말한다. 18세기 각 사회세력의 저항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변란이 영조 4년(1728)의 戊申劂이었다.56) 무신란에는 양반관료 출신을 비롯하여 잔반, 군관, 향임, 소상인, 소작인, 노비 등 다양한계층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민중운동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신란이 일어났던 때를 전후하여 민중운동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邊山群盜나明火賊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비, 유민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고 할 때, 그들의 동향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⁵⁵⁾ 安秉旭、〈朝鮮後期 自治外 抵抗組織으로서의 郷會〉(《聖心女子大學論文集》18, 1986), 24목.

⁵⁶⁾ 李鍾範, 〈1728年 戊申亂의 性格〉(《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민중운동이란 본질적으로 봉건질서가 초래한 모순을 민중 스스로가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서, 기존의 통치질서를 부정하려는 면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되며, 그리하여 민중운동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예민하게 띠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사회 저변에 점차 잉태되고 있었으며, 때로는 국지적으로 분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체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17세기 말에 노비·유민·역관·서열·승려 등에 의한 비밀결사와 미륵신앙운동에서 이미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민중운동은 대다수 구성원인 민중에 의해 주도되기에 앞서 그 초기에는 사회모순에 특히 민감한 특정한 사회세력에 의해 발동된다. 조선 후기 민중운동에서도 당시 민중의 주류인 농민이 주체적으로 변혁운동에 나서는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뒤였다. 17세기 말 이래 특정한 사회세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숙종 10년(1684)경 한양 청파동에는 殺主契가 있었고, 이 보다 앞서 전라도 남원에는 殺人契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은 대개 노비들이었다.57) 숙종 39년 전라도 변산반도에서 수년 동안 횡행하던 군도 역시 대부분 노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58) 노비는 봉건적 신분질서 아래에서 가장 핍박받는 존재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노비는 원칙적으로 벼슬할 수가 없었고, 자유민이 아니어서 신분이 세습되고, 매매・양도・상속되었다. 특히 私奴婢는 주인에 의해 임의로 강제되고때로는 私刑을 받기도 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에 회의하게 되었고, 그러한 현실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원한이 깊어지면서 주인, 즉 양반을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그러한 물리적 힘에 의한 그들의 노력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노비들이 그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그 후 끈질기게 추구되어 노비제는 점차 허구화되어 갔다.

숙종 14년에는 미륵신앙 사건이 발각되었는데, 승려·무녀·아전·노비· 농민 등이 관계되었다.59) 그들 모두가 불우한 계층으로서 미륵신앙을 구심점

^{57) 《}朝野會通》 15책, 숙종 10년 9월.

^{58)《}推案及鞫案》36型、 무진 宋進裕獄事文書.

으로 하여 세력을 결집,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 도 승려세력은 숙종 23년(1697) 몰락농민으로서 규모가 큰 도적집단을 이루고 있던 장길산 등과 거사를 계획하다가 고변되었다.60) 조선왕조는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는 초기부터 지도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민간신앙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승려의 신분은 천시되는 존재였다. 더구나16세기 이후 승려들은 군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산한 양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불량한 무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들 자신들도 현실사회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그들은 농민들을 선동하여 규합하기에 유리하였고, 그들 자신들도 노력에 따라서는 조직력과 군사력을 갖추기에용이하였다.

거사계획에는 당초 서얼 세력도 가담하였다. 서얼은 양반의 자제이면서도 신분질서를 엄격히 지키려는 봉건지배층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아 사회진출에 각종 제한이 가해졌다.⁶¹⁾ 따라서 양반가문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어 불만이 컸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꾸준히 신분상승을 추구하였으나, 그것이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변혁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봉건지배층으로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 18세기 후반에는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서얼층과 더불어 東胥·譯官 등 중인층의 동향도 예사롭지 않았다. 중인층은 상당한 전문적 교양을 가지고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양반사대부와 크게 차별을 받았다. 역사적 신분배경과 기술천시풍토가 그들을 중인층이라는 고정적 신분층으로 굳혀서 정치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 역시 사회변동속에서 부를 축적하며 이를 토대로 꾸준히 신분상승의 기회를 엿보았다.62)

^{59) 《}承政院日記》 332책, 숙종 14년 7월 27・28일.

⁶⁰⁾ 鄭奭鍾、〈肅宗年間 僧侶勢力의 擧事計劃과 張吉山〉(《東方學志》31, 1983), 122쪽.

⁶¹⁾ 李俊九,〈朝鮮後期의「業儒・業武」와 그 地位〉(《震檀學報》60, 1985), 42쪽.

⁶²⁾ 韓永愚,〈朝鮮後期'中人'에 대하여-哲宗朝 中人通淸運動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學報》45, 一志社, 1986), 89쪽.

李樹健,〈朝鮮朝 鄕吏의 一研究〉(《文理大學報》2, 嶺南大, 1974), 80쪽.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중인층의 단결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특히 봉건적 질서가 갖고 있던 모순을 누구 못지않게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향배는 이 시기 민중운동에 있어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한편 18세기에는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하여 잔반 계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중앙정계에서는 붕당정치가 변질되어 가면서 양반 상호간에 일어난 극심한 정치적 갈등은 양반층의 자기 도태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당 전제 화가 전개되면서 보다 현저해져서, 권력을 장악한 일부의 양반을 제외하고는 다수 양반들이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 한 채. 향촌사회에서나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鄕班. 즉 재지사족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이 되어 갔다. 그리고 향촌사회에서는 상품화폐경제의 진 전에 따라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재지사족이 그들의 물적 기반 이 취약해지면서 향권 장악에 실패하고 소외되어 잔반이 되어 갔다. 잔반 계 층은 실학자들의 경우와 같이 교양과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았다. 대부분 농촌 에서 궁박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던 잔반들은 심하면 소작으로 생활을 유지 하거나 상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로 전략하였다. 따라서 체제에 대하여 그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書堂 등을 통해 농민층의 자제를 훈도하면서 농민층의 입장을 지지하고 농촌사회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개진 하면서 기층사회를 각성시켰다. 무신란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자연 스러운 처사였으며, 그들의 활동은 사회모순이 심화될수록 보다 더 기대되고 있었다.

18세기 기층사회의 동향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농민층 분화에 따른 유민의 광범위한 발생이었다. 여러 변란에 다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유민이었으며, 각지에서 횡행한 도적도 유민으로 거의 구성되고 있었다. 토지소유관계의 모순, 상품화폐경제의 진전, 부세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를 상실한 무전농민들은 자신의 노동력만이 생존의 수단이었는데,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탐관오리의 횡포가 가혹해지면서 마침내는 농촌을 떠나야 했다. 18세기 농민의 유망은 17세기보다도 더 심해졌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나 광산, 포구 등에서 賃勞動으로 가족을 거느리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궁벽한 산골을 찾아 火田을 일구거나 도적

이 되었다. 때로는 居士가 되어 걸인·행상·연예활동 등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였는데,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전국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63) 그런데 유민의 증가는 봉건정부로서도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다. 재정기반을 농민으로부터의 부세수취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의 유망은 결과적으로 정부로 하여금 수탈의 기반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민의이농을 막기 위하여 호패법을 실시하고, 오가작통법을 강요하는 등 법제적으로 통제하지만, 생존의 수단을 상실한 농민을 물리력만으로 억제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유망은 매우 광범하였다. 이들 유민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기회만 있으면저항세력화할 소지가 대단히 컸다.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은 향촌사회의 동요, 나아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란 측면에서 봉건지배층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64)

그런데 당시 기층사회의 움직임은 특정한 사회세력에 의한 별개의 움직임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 각 사회세력은 서로 긴밀한 연계 속에서 변란을 시도하고 있었다.65) 그들 모두가 체제의 변혁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사회세력 모두가 권력에의 참여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봉건적 질서가 갖는 모순으로 인해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은 서로간의 결속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봉건지배층은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가 조정하면서 수취체제를 개선하여 농민층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미봉적이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한 조치가 미봉적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민중운동은 보다 적극화되었다. 민중은 이제 더이상 정부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다. 삶의 길은 스스로 개척하고 강구하는 것 뿐임을 알게 되었다. 봉건적 질서의 변혁만이 그들의 살 길임을 점차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⁶³⁾ 全信室,〈居士考-流浪藝術人集團研究序說-〉(《韓國人의 生活意識과 民衆藝術》,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4), 469\.

⁶⁴⁾ 李鍾範, 앞의 글, 227쪽.

⁶⁵⁾ 鄭奭鍾, 앞의 책, 4쪽.

이상에서와 같이 18세기의 조선사회는 봉건적 질서가 갖는 모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활발하게 추구되고 있었다. 변화의 움직임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토대였던 농촌사회가 동요하면서 유발되었다. 농촌사회의 동요는 토지소유관계의 변화, 농업 생산력과 경영형태의 변화, 상품화폐경제의 편입 등 내재적 측면과 탐관오리의 횡포, 부세구조의 모순, 자연재해의 빈발 등 외연적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해 농민층이 양극으로 분화되어갔고, 다수의 농민을 무전농민으로 변신시키기에 이르렀다. 농촌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속에서 농민들은 조선왕조가 내세웠던 농본정책이 기대할 수 없는 허구였음을 깨닫고 자활의 길을 모색하여 힘의 결집을 시도하였다. 그 징표가 농민들만으로 구성된 두레였다. 사회체제에 대한 변혁의 움직임은 농촌에서 배제된 유민들에 의해 보다 고양되고 있었다. 자신의 노동력밖에는 생계수단이 없고,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조건 아래에서 그들이 할 수있는 일은 도적이나 변란에 가담하여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뿐이었다. 민중의 봉기는 시간상의 문제였을 뿐, 필연적으로 예비되고 있었다.

〈崔完基〉

2. 유민과 명화적

1) 유 민

(1) 유민발생의 배경

농민들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는 일차적인 형태로 流亡이 있다. 유망은 농민들이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존기반을 점차상실하여 現居住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의 현거주지를 自意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행위이며, 이들 流亡民을 일컬어 流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망의 결과는 첫째 거

주지의 변화를 가져오고, 둘째 생계수단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유민 자신의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넷째 일시적으로나마국가의 파악 내지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섯째 가족간의 離散을 가져와 가족구성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1)

유망은 농민층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수취체제에 대한 避役저항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취기반의 동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부 농민이 국가의 부세를 피하는 방편으로 유망하면 그 부담은 향촌에 남은 농민들에게 疊役 등의 형태로 추가되었다. 즉 유망이 유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세수취를 피하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이었지만 이것은 남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일반화는 상대적인 賦稅 不均의 심화와 사회통제력의 이완을 가져와 민인들 상호간의 계층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2)

이러한 농민의 유망은 전근대사회에 있어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각 시기마다 그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18세기 유 망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유민의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과 유민들의 일부가 토지에 재긴박되지 않고 완전히 유리되어 간다는 점 이다. 18세기 유망현상의 이러한 특성은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즉 18세기 조선사회는 조선 후기 이래로 진행되어온 농업 생산력의 증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신분제의 동요 등에 따라 중세사회가 해체되는 여러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 동에 따른 모순의 증대로 농민의 유망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규모가 급격하 게 커지면서 중세사회의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였다.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몇 가지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였는데, 그것은 지주층의 토지집적에 따른 토지 소유관 계의 양극분화 현상과 廣作經營의 확대에 따른 경영분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지주층과 새롭게 성장한 부농, 상인들은 토지 상품화가

¹⁾ 邊柱承,《朝鮮後期 流民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7), 1~2~.

²⁾ 安秉旭, 〈朝鮮後期 民隱의 一端과 民의 動向-正祖代 應旨民隱疏를 중심으로-〉 (《韓國文化》2, 서울大, 1981), 281쪽.

일반화되면서 토지매매에 의하여 토지를 집적하여 나갔고, 여기에 이앙법 등을 비롯한 농법의 발전 및 곡물시장을 비롯한 유통경제의 발달은 이들에 의한 토지집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한면 경제구조의 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부세부담, 고리대부담에 농사의 흉작까지 겹쳐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아야만 했다. 이렇듯 토지집중이 극단화되어가는 한편에서는 토지임대차 관계를 통한 경영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이앙법·견종법 등의 보급으로 현저히 상승된 농업 생산력은 필요노동력을 절감시킴으로써 광작경영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분화로 인하여 양산된 貧農・無土之民은 借耕地 획득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지의 차경에서 배제되어 자립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해진 無田農民들은 挾戶・婢夫 등의형태로 지주층에 포섭되거나 雇工 등 농촌 임노동자층을 형성하기도 했지만,이마저 불가능했던 빈농・무토지민들은 토지로부터 축출되어 유민화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유민발생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농업경영의 변동과 상품화폐경제의발달 외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대민 수탈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들어 부세운영이 전세에서의 比摠制, 군역세에서의 里定制, 환곡에서의 里還・結還制 등과 같이 공동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중앙 및 지방의 재정수요가 늘어가게 됨에 따라 각종의 불법적인 수세관행이 파행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나갔다. 수령은 증대된 지배력을 바탕으로 각종 비리를 자행하였으며, 수령과 결탁한 吏鄕 심지어 面・里任들까지도 각종 수탈을 공공연하게 자행하였다.5)

한편 신분제의 동요와 더불어 부민들은 각종의 부담에서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국가의 부세수탈은 빈농층으로 집중되었다. 즉 부민들이 양반신분을 모칭하거나 이서배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종 신역과 白地徵稅, 환곡 등 각종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에 따라 빈농·무토지민들이 이들의 부담까지

³⁾ 李世永, 〈18, 9세기 兩班土豪의 地主經營〉(《韓國文化》6, 1985), 80쪽.

⁴⁾ 宋贊植、〈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0).

⁵⁾ 金仁杰,《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떠맡아야 했다.6) 이처럼 稍實・饒戶之民이 부세부담에서 벗어남에 따라 빈민 층으로 조세수탈이 집중되고, 이로 말미암은 유망으로 인하여 疊徵・族徵 등 이 농민층에게 강요되자 유망현상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와 함께 조선 후기의 극심한 자연재해는 민의 유망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조선 후기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대 규모 기근은 평균 3~6년에 1회, 전염병은 2~6년에 1회 정도 발생하였는데, 재해가 심할 때에는 영조 16년(1740)의 경우처럼 전국에서 일시에 50~60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7) 일정한 생업기반을 갖지 못한 유민 들은 특히 기근·홍수·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었 다.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주인을 결박한 채 수확하지 않은 들판의 곡식을 베어먹거나 방목한 牛馬를 잡아먹었으며,8) 심지어 한동네 여인을 살해하여 식육하기도 하였다.9) 한겨울에도 볏집으로 겨우 등과 배를 가린 채 추위에 떨다 무덤을 파헤쳐 斂衣를 걸쳐입기도 하였지만 부지기수가 얼어죽었다.10) 이러한 기근의 참상 속에서는 가족간의 인륜마저 저버리게 되어서 유랑의 과정에서 6~7세된 어린 자식을 버리거나,11) 어머니를 길에다 내버리기도 하 였으며,12)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길을 찾지 못하던 유민 일가족의 가장이 처자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목매 죽기도 하였다.13)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 에서 떠도는 유민들은 "무뢰유민이 도성 안으로 몰려들어 처음에는 소나 말 을 훔치는 도적이 되었으나 지금은 인가를 약탈하는 도적이 되었으며, 성 밖 수십 리 지역까지 그 피해를 입고 있다"14)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호구지 책의 한 방편으로 도적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⁶⁾ 安秉旭, 앞의 글.

⁷⁾ 趙 珖, 〈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19世紀 韓國 傳統社會의 變貌의 民衆 意識》,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8) 《}顯宗改修實錄》 권 23, 현종 11년 8월 갑오.

^{9) 《}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 8월 신유.

^{10) 《}顯宗改修實錄》 권 23, 현종 12년 정월 계해.

^{11) 《}顯宗改修實錄》 권 24, 현종 12년 4월 갑신.

¹²⁾ 金壽增,《谷雲集》 권 6, 記流民事.

^{13) 《}英祖實錄》 권 89, 영조 33년 정월 신해.

^{14) 《}肅宗實錄》 권 54, 숙종 39년 5월 갑자.

(2) 유민의 실태와 유입처

18세기 유민 발생양상의 특징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유민의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과 유민 중의 일부는 농촌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 농민층 유망현상의 이러한 특징은 지방관의 보고와 진휼관계기록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조 13년 (1789)에 발생한 황해도 지역 유민 9,345명의 환집 추이를 관찰사 李時秀의보고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조 13년(1789) 황해도 지역 유민 9,345구 환집추이

시	기	환 집(%)	미 환 집(%)	출 전
14년	3월 5일	2,526子(27.0%)	6,819구(73.0%)	《정조실록》
14년	6월 1일	4,1437(44.3%)	5,202구(55.7%)	《일 성 록》
15년	정월 2일	5,022구(53.7%)	4,323구(46.3%)	《정조실록》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유망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유민의 반수 정도가 아직 본거지로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평안도의 경우도 정조 14년의 평안도 流亡民 2,353명 중에 942명이 8월 이전에 환집하였으며, 9월에서 12월 사이에 331명이 추가로 환집하는데 그치고 유망민의 거의 절반인 1,083명은 본거지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15) 이처럼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민의 거의 반수 정도가 본거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이제 유민들 중의 일부는 농촌에 재긴박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영조 29년(1753)년부터 33년까지 松都府에서 飢民과 流丐에게 행한 진휼사실을 기록한〈松都設賑啓錄〉16)의 분석을 통해이 시기 유민의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진율은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행해졌는데,이 때 양곡을 지급받은 기민과유개 숫자의 변동추이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正祖實錄》 권 31, 정조 14년 12월 갑인.

^{16)《}松都設賑啓錄》(《各司謄錄》京畿道篇 4, 國史編纂委員會, 1982).

〈표 2〉 〈송도설진계록〉의 기민·유개 구수 월별 변동·	- キロ17	벼도추이1	원변	구수	유개	기미	로〉의	〈소도선지계	丑 2>	1
---------------------------------	-------------	-------	----	----	----	----	-----	--------	------	---

연 대	구	분	2 월	3 월	4 월	5 월
영조 30년	기	민	2,587	2,646	4,911	4,948
(1754)	ᡥ	개	73	140	271	427
영조 31년	7]	민	5,806	5,911	5,943	6,124
명조 31년 	유	개	180	113	154	220
영조 32년	기	민	7,350	7,357	7,412	7,514
경조 32년	유	개	16	360	420	492

위〈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토지에서 완전히 축출된 유망층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토지에 어느 정도 긴박된 飢民과는 달리 토지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유개의 숫자가 3년여에 걸쳐 기록되고 있는데, 송도부의 진휼담당자들은 이들 유개들을 '無田無族屬者', '籍外流乞' 등이라 하여, 이들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유망층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와 같으니 나머지 여러 도의 실정도 가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미루어 이 시기 토지로부터 이탈한 유망층의 확대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발생한 유민들의 존재형태는 다양하였다. 유민들 중의 일부는 농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상업이나 수공업·광업 등 자본제적 관계 아래에서 임노동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또한 불완전하게나마 토지와 재결합하여 잔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유민층의 향촌내 존재형태로일정한 거처가 없는 '無根無着之類'가 사료에 보이는데, 이들은 농업노동자로서 고용처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떼거리로 표현되듯이 이곳저곳을 편력하는 농민층이었다. 유개의 지경에 이르지 않고 옷입은 겉모습이 일반인과 다름없는 자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閻家에 돌입하여공갈치고, 주구를 일삼는다는 기사는18) 향촌내 유망층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¹⁷⁾ 分給은 매달 10일 간격으로 3번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에 그친 경우도 있다. 위 표의 口數는 해당 월의 마지막 지급 때의 구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18) 《}備邊司謄錄》 201책, 순조 11년 5월 6일.

한편 토지와 향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유민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살 길을 찾아 다양한 지역으로 유망하였다. 이들의 유입처를 그 지역을 기준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도시 특히 서울지역으로의 유망을 들수 있다. 이것은 도시가 갖는 임노동자의 수요와 서울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행해 지는 진휼대책에서 기인하였다. 당시로서는 서울이 가장 훌륭한 구휼제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상공업의 발달면에서도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앞서 있 었던 까닭에 유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몰려들고 있었다.19) 일례로 영조 17 년(1741)에 경기·황해·강원도 삼도의 유민 중 서울로 몰려든 수가 1.400여 명이나 되었다.20) 영조 33년에는 通津・金浦・陽川・富平 등지의 유민들이 京江가에 몰려들어 새로운 촌락을 형성하였는데, 한성부에서는 호적에 누락 된 이들을 입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21) 이처럼 유민들의 서울 집중으로 서울의 인구는 17세기 중엽을 고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행정구역의 재편을 가져왔다.22) 18세기 전반에는 경강의 중심부인 용산・서강・한강・두모포 등지가 각각 한성부 五部 밑의 행정단위인 坊으로 편입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경강 하류지역인 망원·합정 지역이 다시 연희 방・연은방・상평방으로 편제되었으며, 坊制에 편입되지 않았던 동대문 밖 지역도 숭인ㆍ창신방으로 편입되었다.23)

서울로 들어온 유민들은 뚜렷한 거처가 없이 길거리를 떠돌며 노숙하거나성 밖 교외지역 곳곳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결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조금 나은 자들은 貰居 또는 借居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용역으로 임금을 받아 먹고 사는 임노동자가 되었다.²⁴⁾ 당시 한강 연안에는 稅穀船을 비롯한 각종 선박에 의해서 쌀·어물·목재를 비롯한 전국의 물산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작업을 비롯한 각종 노동에 많은

¹⁹⁾ 孫禎睦、《朝鮮時代 都市社會研究》(一志社, 1977), 157~165\.

^{20) 《}英祖實錄》 권 53, 영조 17년 3월 신묘.

^{21) 《}承政院日記》 1144책, 영조 33년 5월 23일.

²²⁾ 楊普景, 〈서울의 공간 확대와 시민의 삶〉(《서울학연구》1, 1994), 54~56쪽.

²³⁾ 高東煥,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3), 298零

²⁴⁾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 적 기원-》(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51쪽.

임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山陵役·築城役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도로 보수, 개천 준설과 같은 공사에도 도시로 흘러온 유입민들이 募軍으로 고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들 모군은 종래의 징발 役軍과는 달리 임금을 지급받는 임노동자층이었다.²⁵⁾

둘째는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광업·수공업·상업 발달 지역으로의 유망이다. 조선 후기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 분업을 진전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곧 借地경쟁에서 배제된 빈농·무토지민이 농촌에서 축출된다 하여도 이들이 흡수·수용될 수 있는 고용기회가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성립된 18세기 '別將'制下의 官設民營鑛業과 18세기 말 19세기 전반기 '物主'制下의 자본제적 민영광업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광산노동자들은 "생활할 터전도 없고 호적에도 들어있지 않은 무리" 또는 "의지할 곳 없는 부류들로 稅役을 피해 투입된 자들"로서 이들은 농촌에서 유리된 빈민들이었고 세역을 도피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26) 이처럼 광산에 몰려든 유민들은 대개 店所의 채굴 제련작업에 고용되어 그 수가 한 점소 당 대개 백여 명 이상에 달했으며, 매일 또는 매월 일정한 雇價를 받고 종사한 임노동자들이었다.27) 또한 조선 후기 이래의 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출현한 자영수공업체인 유기점·야철점·직조점 등에는 '店主' 또는 '物主'라고 부르는 고용주가 있었고 그 고용주는 많든 적든 일정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노동자 역시 농민층 분해과정을 통하여 분출된소위 '농토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8)

한편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전국적인 場市의 발달 및 상업도시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巨商으로서 개성상인·의주 상인·동래상인·경강상인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도 새로운 현상이었지만,

²⁵⁾ 尹用出,《18世紀 徭役制의 變動과 募立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273~275等.

²⁶⁾ 柳承宙,《朝鮮時代鑛業史硏究》(高麗大 出版部, 1993), 309~311 · 385~387\.

²⁷⁾ 柳承宙、〈朝鮮後期 金銀銅鑛業의 物主制研究〉(《韓國史研究》36, 1982), 146零.

²⁸⁾ 金泳鎬,〈朝鮮後期 手工業의 發展과 새로운 經營形態〉(《19世紀의 韓國社會》,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185~186쪽.

몰락한 농민층이 스스로 이농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당시의 실정이었다. 특히 상공업도시로 발달하고 있던 서울의 亂廛商人·潛商·私商들은 바로 농촌을 떠난 유민들이었다. 즉 이들 유리민들은 다시 농촌에 돌아가지 않고도 상업을 통하여 생계를 이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상업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²⁹⁾

셋째는 국가의 수탈이 미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으로의 유망으로써 대체로 화전지대, 海島지역, 북쪽 국경지역 등으로의 유망을 들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광범히 개간되고 보급되던 火田은 단순히 원형에 가까운 遊農火田이 아니었다. 이러한 화전과 더불어, 여기서 발전하면 1, 2년 혹은 3년 정기로 휴한하고 경작하는 歲易田으로, 나아가서는 常耕田의 개발이 동반되었다. 화전은 山多野少한 평안・함경・강원・황해도 등 북부지역 및 충청도산읍에서 특히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화전지대로 많은 수의 유민이 몰려들고 있었다. 즉 인구증가・토지겸병과 소작지의 광작 등으로 토지에서 배제되는 농민들이 속출하여, 이들은 산간계곡으로 유랑하며 화전을 가꾸었던 것이다. 특히 화전은 田役・賦役 등의 부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부세수 탈로 인해 유망하게 된 많은 유민들이 몰려들고 있었다.30) 산간지대로 몰려든 유민은 '入作'이라 불렸는데,31) 현종 7년(1666)에 도승지 金壽興은 이들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러 도의 入作한 무리들이 열 명이나 백 명씩 떼를 지어 신역을 피하기 위해 산골짜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名籍이 관가에 소속되지 않은, 일종의 교화를 벗어난 백성이다(《顯宗改修實錄》권 14, 현종 7년 3월 임오).

이처럼 많은 유민들이 산중으로 몰려들어 화전을 개간함에 따라 수백 년 된 숲이 불타 없어지고, 이로 인해 시내가 말라붙어 가뭄의 한 요인이 되기 도 하였다.³²⁾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현종 7년의 〈入作流民入籍事目〉과 숙종

²⁹⁾ 李世永, 〈18, 9세기 穀物市場의 形成과 流通構造의 變動〉(《韓國史論》9, 서울 大, 1983), 206~208쪽.

³⁰⁾ 申虎澈、〈朝鮮後期 火田의 擴大에 대하여〉(《歷史學報》91, 1981). 李景植、〈朝鮮後期 火田農業과 收稅問題〉(《韓國文化》10, 1989).

^{31) 《}顯宗改修實錄》 권 6, 현종 2년 윤 7월 경인.

원년(1675)의〈火田禁斷事目〉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인 유민에 대한 안집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한편 국가의 부세수탈을 피하고 살길을 찾아서 많은 수의 유민들이 섬지 방으로 들어가거나, 북쪽의 국경지역으로 유망하였으며 나아가 越境하기도하였다. 유민들의 海島入住는 주로 17~18세기에 걸쳐 전란도 연안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33) 유민의 해도입주 이유에 대해 효종 6년(1655) 해남에 거주하던 尹善道는 海島民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유민들이 해도에서 거주하는 까닭은 인구는 많고 땅은 적어서 육지에서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으로, 그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34) 유민의해도입주 실태를 보면 숙종 33년(1707)에는 전라도의 可佳島에만 100여 호의유민이 몰려들었으며,35) 영조 7년(1731) 호남어사 黃晸은 "남해 연안의 여러섬들이 悍民 중 군역을 도피한 자와 역모 연좌자의 소굴이 되고 있다"36)고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수의 유민들이 섬으로 몰려들어 거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조정에서는 기존의 민인의 해도입주를 금지하는 정책에서 전환하여 身役을 부담하지 않는 이들에게 民役을 부담시키는 방안과,37) 이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서에 대한 '設邑論'이 제기되었다.38) 또한 정조 17년(1793)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경작지 부족현상을 타개하고 海防에 이용하기 위해 長淵의 大靑島・小靑島에 민인들이 들어가서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는 한편 이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農牛와 종자를 공급하기도 하였다.39)

한편 유민들의 일부는 북쪽 국경지역으로 유망하였는데, 영조 17년 成川江

^{32) 《}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 12월 18일.

³³⁾ 李海濬,〈新安 島嶼地方의 歷史文化的 性格〉(《島嶼文化》7, 1990), 110\.

³⁴⁾ 尹善道,《孤山遺稿》 권 2, 時弊四條疏.

^{35) 《}備邊司謄錄》 58책, 숙종 33년 8월 21일.

^{36) 《}英祖實錄》 권 29, 영조 7년 정월 무진.

^{37) 《}英祖實錄》 권 62, 영조 21년 9월 기축.

^{38) 《}英祖實錄》 권 73, 영조 27년 2월 기축.

^{39) 《}正祖實錄》 권 37, 정조 17년 4월 경인.

沿邑의 山谷 개간처에 많은 수의 南土流民이 몰려들었다.40) 정조 원년에는 함경도 北靑의 天坪지역 공활지에 유민이 몰려들어 거처하는데 그 수가 100 역 호에 이르러 창고를 개설하고 환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41) 이처럼 북쪽 국경지역으로 많은 유민들이 몰려듦에 따라 厚州・茂昌・閻延・虞芮・慈城 등 廢四郡지역의 복설과42) 함경도 長津 등에 대한 '설읍론'이 제기되었다.43) 한편 유입민의 증가로 새로운 개간지가 필요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개간처를 확대하고 新接民에 대한 安接방안을 강구하였다. 정조 17년 강계부의 麻田嶺과 慈柞嶺 사이에 三川坊을 설치하고 유민들의 개간을 허락하자 1년 만에 1,161호가 신접하였는데,44) 이들에 대한 안접방안으로 우선 해당 민가에 대해 陳荒田을 起耕하면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주고 風憲・禁監・尊位 등의 책임 아래 家座와 田土를 헐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으며, 農糧・農牛 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대여해주도록 조치하였다.45)

한편 北界지역의 유민들 중 일부는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기도 하였다. 西北兩道民을 중심으로 특히 함경도민이 다수를 차지한 이들은 채삼·수렵·벌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월경하였다.46) 숙종 11년(1685)에 三水·甲山·江界 등지의 채삼인들이 월경하여 淸人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犯越作變罪人을 체포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산골의 유망민이었다.47) 조정에서는 범월이 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킴에 따라 숙종 12년〈南北蔘商沿邊犯越禁斷事目〉과 숙종 14년〈邊邑採蔘犯禁之律〉등 처벌법을 강화하고 변경의 수비를 엄칙하였으며 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이러한 각종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민들의 범월은 계속되었으며, 영조 23년 (1747)에 국경을 넘어 14년을 거주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체포, 압송된

^{40) 《}備邊司謄錄》 109책, 영조 17년 8월 3일.

^{41) 《}正祖實錄》 권 3, 정조 원년 4월 임인.

^{42) 《}正祖實錄》 권 5, 정조 2년 정월 갑술.

^{43) 《}承政院日記》 1629책, 정조 11년 7월 4일.

^{44) 《}日省錄》 정조 18년 11월 19일.

^{45)《}江州文蹟》(《地方史資料叢書》5, 驪江出版社,1987)新來民除役事傳令及節目新來民安接事傳令.

⁴⁶⁾ 金慧子, 〈朝鮮後期 北邊越境問題 研究〉(《梨大史苑》18·19, 1982).

^{47) 《}備邊司謄錄》 39책, 숙종 11년 11월 10일.

慶興府婢 參禮와 小業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영구이주 양상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⁸⁾

이처럼 유민들은 살길을 찾아서 다양한 지역으로 유망하였는데, 한편으로 유민들의 일부는 국가의 부세수탈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승려, 居土가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피역유민의 승려화 추세는 "일반 백성 중에 부세를 안내려고 꾀하는 자들이 잇따라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良丁이 날로 축나고군졸의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49)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도첩제의 실시를 강화하거나,50) 사찰을 훼파하여 승려를 환속시키자는 논의 등이 제기되었다.51) 한편 조선 전기에 환속 승려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사배에, 조선 후기에 와서 유민의 일부가 합세하여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52) 정조 10년(1786)에 경상도 河東 일대에 몰려든 거사집단에 대해 조정에서는 이들을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이름은 호적에서 빠져 있고 身役은 지지 않으니 유민 중에 가장 수상한 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병역에 충정하거나 絶島의 노비로 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5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민들은 다양한 경로로 유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권력 및 지주층의 수탈에 따라, 농촌으로부터는 생산력 발달에 따라 절감된 필요노동력 이상이 유출되었으며, 상공업 및 도시로는 필요 이상의 과잉노동력이 유입됨으로써 이들을 흡수·수용할만한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결여되고 있었다.54) 따라서 농촌에서 벗어난 다수의 유민들은 광업·수공업 등의 비농업 분야로 흡수되었지만 사회적 분화의 미숙성과 지주층 및 국가권력의 중첩되는 수탈로 유민들의 일부는 유개·도시빈민·부랑

^{48) 《}英祖實錄》 권 66, 영조 23년 12월 갑술.

^{49) 《}備邊司謄錄》 28책, 현종 10년 12월 22일.

^{50) 《}英祖實錄》 권 61, 영조 21년 5월 갑신.

^{51) 《}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 5월 정유.

⁵²⁾ 全信字、〈居士考〉(《韓國人의 生活意識과 民衆藝術》,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4)、463等.

^{53) 《}承政院日記》 1596책, 정조 10년 2월 22일.

⁵⁴⁾ 赛亢燮,〈壬戌民亂 前後 明火賊의 活動과 그 性格〉(《韓國史研究》60, 1988), 180等。

자층과 같이 광범위한 부유집단을 형성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리걸식하고 있었다.55)

유민들의 이러한 불안정한 처지는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체제의 긴박으로부터 벗어나 첨예한 저항의식을 갖게 된유민들 중의 일부는 이 시기의 다양한 저항활동에 참여하였다. 즉 일부 유민은 무장집단인 명화적의 활동을 통하여 지배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으며, 나아가 영조 4년(1728)의 戊申亂에 하층 무력기반으로 참가하거나,56) 정조 9년(1728)의 '居土輩 謀逆同參事件'과 같은 각종 변란에도 참여하였다.57) 요컨대 유망은 외형상 그리 격렬하지는 않지만, 여러 저항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체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물론 유민의 대다수는 아직 현실과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와 지향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인 체제의 긴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58)

(3) 정부의 유민대책

정부에서는 농민의 대규모 유망현상에 직면하여 농민의 재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수취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진휼정책과 대민 통제책 등을 시행하였다. 정부의 진휼정책은 田稅를 비롯한 諸稅의 견감 및 身役・貢物의 감축을 비롯해 춘궁기에 식량과 종자를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회수하는 환곡제도, 그리고 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飢民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白給 등이 있었다.59) 그런데 18세기 들어 환곡의 진휼기능이 점차 위축됨에 따라 조선 후기 진휼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 구제곡의 무상지급 즉 賑給이었다. 진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황이 든 기민 중에서도 호적에 실린 無

⁵⁵⁾ 邊柱承, 〈19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浮遊集團을 중심으로-〉(《史叢》40·41, 1992), 52~55쪽.

⁵⁶⁾ 李鍾範, 〈1728年 戊申亂의 性格〉(《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⁵⁷⁾ 全信宰, 앞의 글.

⁵⁸⁾ 홍순민, <17세기 말 18세기 초 농민저항의 양상>(《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 사비평사, 1992), 60쪽.

⁵⁹⁾ 文勇植, 〈18세기 후반 진휼사업과 賑資 확보책〉(《史叢》 44, 1995), 105쪽.

土, 無依之類로 제한한 위에 다시 無籍者와 유민을 제외시켰다. 진급대상에서 유민을 제외시킨 것은 본토를 떠나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流散을 방지하고 수령의 본읍민에 대한 구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무적자의 제외 역시 호적에서 이탈되어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민의 조세 기피를 저지하고 국가의 담세자 우선 구제 입장을 나타내기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진급은 긴급 인명 구제책이면서 동시에 체제유지를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60)

정부에서는 이러한 진휼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농민의 유망현상을 억제하기위해 대민 통제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정부에서는 농민의 유리·도산을 방지하여 징세대상자를 확보, 파악하는 수단으로 五家統制·號牌法·鄕約制를 이용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부세의 징수가 邑勢·民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군현 단위의 총액제로 경직되게 운영되어 많은 농민들이 피역의 수단으로 유망하게 되었고, 이에 부세의 부족분이 향촌에 남아 있는 다수의 농민의 추가부담이 됨에 따라 유망의 악순환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농민의유리를 막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 출신 유리민을 적절히 제지하며, 유리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사전에 등록시켜 감시하는 제도의 확립이 절실했다. 숙종원년(1675)에 제정된〈五家統事目〉과 숙종 3년의〈寬恤節目〉, 그리고 숙종 37년의〈良役變通節目〉등은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61)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의 진휼정책과 향촌통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농민이 향촌을 이탈하여 유망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 유민에 대한 직 접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유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 로는 유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죽의 지급, 의복과 주거용 가마니의 제공 그리고 전염병이 성행할 경우의 구료대책, 사망 유개의 매장대책 등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서울로 많은 수의 유민이 몰려들자 그 대책의 일환으로, 도성의 유개를 한강 가운데에 있는 栗島[밤섬]에 수용하였다가 서해의 각 섬에 分送하는 한시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도 하였다.62) 숙종 23년에 형조판

⁶⁰⁾ 鄭亨芝, 《朝鮮後期 賑恤政策 硏究-18世紀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박사학위논 문, 1992), 211~212쪽.

⁶¹⁾ 吳永教, 〈朝鮮後期 五家作統制의 構造의 展開〉(《東方學志》73, 1991).

서 李世華는 도성 안 유개들이 도적질을 하는 등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들을 경기도 연안의 여러 섬으로 분산 수용할 것을 건의하였다.63) 이에 따라 율도에 모인 유민들은 곧 각 섬에 분산 배치되었는데 大島에는 $40\sim50$ 구, 小島에는 10여 구가 분송되었으며, 이들 중 丁壯者는 漁鹽의 役을 돕도록 하였고 幼稚者는 조정의 事目에 따라 수양하도록 하였다.64) 그러나이러한 분산 수용은 유민대책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는 못하였다. 율도에수용되었던 875명 가운데 죽거나 전염병에 걸린 자를 제외한 700여 명이 스스로 원하여 섬을 나왔으나, 그 뒤에 얻어먹을 곳이 없어 죽은 자가 또한 절반이 넘었다는65)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의 직접적인 유민대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민의 본적지로의 환송이었다. 유민들에게 마른 양식을 지급하여 본적지로 환송시키는 것은 조선 전기 이래의 기본적인 유민대책이었다. 그러나 일정한 생업기반이없어 본거지를 이탈한 유민들에게 있어 이러한 환송책 역시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유민들은 본거지로 되돌아간다 하여도 경작할 땅이 없었으며, 국가의 부세수탈 역시 계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유망하지 않을 수없었다. 도성의 유개들이 양식을 받아먹기만 하고 본거지로 돌아가는 자는한 사람도 없다는 지적은66)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관료들도 유민들이 본거지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는 있었다. 숙종 29년(1703) 大司諫 李健命은 도성으로 많은 유민이 몰려드는데,이들은 일정한 생업과 田土가 없어 유망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본적지로 돌려보낸다 하여도 이들은 곧바로 다시 유망하게 된다고 하였다.67) 또한 行司直李寅燁은 기민들은 부역을 견디지 못해 유망하므로 지방관의 부역침탈을 엄금해야만 많은 유민들이 본거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68) 이처럼 유

⁶²⁾ 邊柱承, 〈숙종 23년 都城流丐 栗島收容策의 시행과 그 결과〉(《全州史學》4, 1996), 144쪽.

^{63) 《}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 2월 신해.

^{64) 《}承政院日記》 370책, 숙종 23년 3월 11일.

^{65) 《}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 5월 갑진.

^{66) 《}備邊司謄錄》 53책, 숙종 29년 3월 2일.

^{67) 《}肅宗實錄》 권 38 상, 숙종 29년 3월 경술.

^{68) 《}肅宗實錄》 권 38 상, 숙종 29년 3월 임자.

민의 본적지로의 환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18세기 중엽을 고비로 도성유민의 본적지로의 환송은 자원자에 한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이후 서울의 상품화폐경제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한성부에 분부하여 五部로 하여금 일일히 조사하게 하니, 관동 11읍 지역의유민으로 도성에 몰려든 수가 26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수년 전에 몰려온자도 있고 작년에 들어온 자도 있다. 이들 무리는 이미 정착하여 되돌아 가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강제로 돌려보내기 어렵다. 한성부에 명하여 이들을 일제히 불러모아 만약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전례대로 마른양식을 지급하여 본토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承政院日記》1399책, 정조원년 5월 15일).

본적지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민에게는 약간의 양식을 지급한 후, 지역 별로 備邊郎・宣傳官 등의 책임자를 정해 환송하였다. 정조 14년(1790) 평안도・함경도・원춘도・황해도에서 도성으로 몰려든 유민 487명의 환송 절차를 보면 이들 중 장정에게는 米 3~5두, 노약자에게는 米 2~3두와 의복 구입비로 약간의 돈을 지급하고, 평안도 유민 49명은 비변랑 李冕膺, 함경도유민 45명은 선전관 鄭周成, 원춘도 유민 206명은 선전관 趙華錫, 황해도 유민 187명은 선전관 李商一 등의 인솔에 따라 환송되었다.69)

한편 유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만큼 遺棄兒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기아를 양자, 노비, 고공으로 收養하는 유기아 수양법은 조선 전기에 이미 대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법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춘 것은 숙종 21년(1695)의〈乙亥遺棄兒收養法〉이었으며, 이후 영조 8년(1732)〈壬子賑恤事目〉, 정조 7년〈字恤典則〉등을 제정하여 유기아·행걸아에 대한 관리, 수양 규정이 정비되었다.70〉유기아 留養은 유리걸식하는 여인 가운데 젖먹이는 자를 택하여 1인마다 두 아이씩 나누어 주고, 乳女에게는 일정한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유리걸식하지 않는 자가 원할 경우에

^{69) 《}承政院日記》 1672책, 정조 14년 2월 4일 · 2월 6일.

⁷⁰⁾ 金武鎭, 〈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啓明史學》 4, 1993).

도 어린이마다 일정한 양의 식량을 보조하였다. 행걸아는 부모가 없고 친척혹은 주인이 없어 의탁할 데가 없는 자들인데 이들은 진휼청에서 보릿고개까지 머물며 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기아 수양법의 제정·정비는 유기아·행걸아에 대한 구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망노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양반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데대한 배려도 포함된 조처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새로운 노비창출을 법제화하지 않고는 노비의 충원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유기아, 행걸아에 대한 구휼을 기화로 노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71)

정부에서는 유민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모색하였으나 그것은 대체로 유민들을 일시적으로 진휼하는 차원에 그쳤을 뿐, 근본적으로 유망의 원인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유민들은 살길을 찾아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랑하였다.

2) 명화적

(1) 명화적 발생의 배경과 조직체계

18세기의 농민항쟁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앞선 시기의 항쟁을 잇는 것으로 지배층의 비리, 학정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괘서사건, 지배층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투쟁을 고취시키는 秘記‧圖讖記의 유포, 수령을 축출하기 위해 시도되는 殿牌作變이나 松田放火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8세기에는 明火賊이라 불리는 도적집단의 활동이 주목되는데, 이들은 도처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지배층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72)

먼저 명화적의 유래를 살펴 보면, 명화적은 일반 도적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丁若鏞은 나라를 좀먹는 큰 도적과 대비되는 작은 도적을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밤중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 함과 고리 짝을 열고 옷주머니나 상자를 뒤져서 옷이나 대야를 훔치거나, 혹은 가마솥

⁷¹⁾ 鄭奭鍾,《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179~182\.

⁷²⁾ 한상권, 〈18세기 前半 明火賊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韓國文化》13, 1992), 481쪽.

을 떼어 가지고 달아나는 자", 둘째 "칼을 품고 몽둥이를 소매 속에 감추고 길에서 사람을 기다려 우마나 돈을 빼앗고 칼로 찔러서 그 입을 막는 자", 셋째 "준마를 타고 수 놓은 안장에 올라앉아 뒤쫒는 자가 수십 인이요, 횃불 과 창검을 높이 세우고 부자집을 택하여 들어가 주인을 결박지은 다음 금고 를 털고 곡식창고를 불지르며, 거듭거듭 협박하여 감히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는 절도, 둘째는 강도, 셋째는 명화적 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³⁾

이처럼 명화적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며, 공격시에는 불을 지르는 화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절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무장집단이었다. 법전 에서는 일반 절도, 강도와 달리 이들을 "무리를 모아 도로를 차단하고 인명 과 재산을 약탈한 경우에는 명화적으로 論罪한다"고 규정하였다.⁷⁴⁾

명화적의 활동은 조선 전기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나 18세기에는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을 갖는다. 조선 전기에는 자연재해와 농민들의 기근, 과중한역부담, 지배층의 대토지 집적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 등으로 농민들의 일부가 명화적이 되었다.75) 그러나 18세기는 조선 후기 이래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농민층 분화, 지주층과 국가권력의 수탈에따라 많은 농민들이 유망하였다. 광범하게 발생한 유망민들은 광업, 수공업등과 같은 비농업 부문으로 흡수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유망민들은 자립적 기반이 취약한 행상이나, 도시빈민, 거지 등의 부유계층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생업기반이 없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유민들은 호구지책의한 방편으로 도적질을 통해 목숨을 연명하였으며, 이들의 도적행위는 점차발전하여 무장집단인 명화적이 되기도 하였다. 영조 17년(1741) 谷山의 幼學

소위 도적에는 두 종류가 있다. 흉년에 갑자기 도적이 되는 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좀도둑질로 목숨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관아에서 널리 飢民을 뽑아 날짜를 헤아려 양식을 지급하고 본거지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⁷³⁾ 裵亢燮, 앞의 글, 194~195쪽.

^{74)《}新補受教輯錄》刑典 臟盜.

⁷⁵⁾ 한희숙, 〈15세기 도적활동의 사회적 조명〉(《역사와 현실》 5, 1991), 157쪽.

면 보리가 피고 난 후 스스로 도적질을 멈출 것이다. 그러나 용모가 번지르하고 의관이 깨끗한 자들은 막기 어려운 도적이다. 兩西의 嶺東과 嶺北은 전에 없는 흉년을 당하여 자녀를 팔기를 보통 일처럼 하며 서로 잡아먹는 변이 눈앞에 이르러서, 죽을 지경에 놓인 飢民들은 도적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고 기꺼이 도적무리에 합류한다. 근래 官府를 침범하여 물화를 약탈한 三登・成川・鳳山의 도적들을 보면 이들은 작은 근심거리가 아니다. 이전부터 逃死亡命之類들이 관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간의 험준한 곳에 몸을 숨기고서, 무리를 불러모아 京鄉과 체결하고 八路에 널려 있다. 이들은 일조일석에 도적이 되는 무리가 아니다(《承政院日記》928책, 영조 17년 2월 18일).

유민들의 도적집단화는 흉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이미 생업기반을 상실한 유민들은 명화적집단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숙종 15년 (1689)에는 농사가 흉년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서 지역에 명화적의 활동이 치성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購捕節目〉이 반포될 정도로 이 시기 명화적의 활동은 일상적이었다.

이 시기의 명화적은 토지겸병의 심화와 부세수탈의 강화로 격심해진 농민 층 분화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주요 구성원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아직 다른 곳으로 흡수되지 못한 유리농민층을 중심으로 당시 새롭게 발생한 광산노동자층 그리고 신분해방을 위해 도망한 노비층 등이 가세하여이루어졌다.76) 숙종 15년에 대구에서 잡힌 도적집단을 조사한 결과 도적 연루자들이 모두 "호적에 들어 있지 않고 紙牌도 없는 무뢰배"로 나타났는데,77) 이들이 바로 토지로부터 이탈된 유리농민층이었다.

한편 부세수탈을 피하여 승려나 거사가 되었던 자들도 명화적의 구성원이되기도 하였다. "불을 지르고 도적질을 하는 자들은 대개 승려"⁷⁸⁾라는 지적과, "居士黨이 그 수가 적으면 명화적이 되고 많으면 역모를 도모한다"⁷⁹⁾고한데서 알 수 있듯이 피역양민이 주축이 된 승려나 거사들도 명화적의 주요구성원이 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기강해이에 따라 지방 감영에 소속되었다가

⁷⁶⁾ 한상권, 앞의 글, 501쪽.

^{77) 《}備邊司謄錄》 43책, 숙종 15년 12월 15일.

^{78) 《}肅宗實錄》 권 3, 숙종 원년 5월 신미.

^{79) 《}正祖實錄》 권 21, 정조 10년 2월 을유.

실직된 일부 포수들이 명화적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80)

조직력과 무장력에 있어서도 18세기의 명화적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를 갖추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 도적집단은 대략 20명 내지 40명이한 부대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활이나 창, 칼로 무장하고 활동하였다.81) 그러나 18세기에 활동하던 명화적은 총포로 무장하였으며 그 규모도수백 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와 같은 18세기 명화적의 특성은 영조 3년(1727) 洪州의 幼學 李日章의 상소에 잘 나타나 있다.

銅錢이 유통된 이후로, 동전은 가볍고 저장에 용이하여 팔고 쓰는데 편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활무뢰한 무리들이 黨을 만들어서 山澤에 몰려들었다. 그 규모가 작은 경우는 수십 명씩 무리를 이루어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마을을 약탈한다. 규모가 큰 경우는 백 명, 천 명으로 무리를 이루어 두목을 두기까지 하는데 守令 혹은 邊將이라 칭한다. 日傘을 펼치고 총포를 쏘아대며 대낮에 거리낌이 없이 錢貨를 약탈한다. 만약 약탈한 물품이 곡물과 같이 운반하기어려운 물건이면 유개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義賊이라 칭한다(《承政院日記》636책, 영조 3년 윤 3월 16일).

이처럼 이 시기의 명화적은 전 시기보다 훨씬 발전된 조직, 무장을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동전의 유통 보급으로 가치의 이전이 편리해지고 가치의 보관이 간편해졌을 뿐만아니라, 팔고 쓰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종래보다 도적행위가 빈발하고, 그집단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은82) 18세기 명화적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이 시기의 명화적은 상당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명화적은 좀도둑과는 달리 무리를 모아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일부는 團號를 가지고 활동하기까지 하였다. 이들 團賊 중 서울에 있는 단은 '後西江團', 평양에 있는 단은 '廢四郡團', 재인은 '才團', 유개인은 '流團'이라 칭하였다.⁸³⁾ 이처럼 명화적은 지역적, 신분적 차이를 기준으로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들 명화적 집단은

⁸⁰⁾ 蔡濟恭,《樊巖集》 권30, 畿甸賊徒處治事宜啓.

⁸¹⁾ 한희숙, 앞의 글, 151~152쪽.

⁸²⁾ 元裕漢,《朝鮮後期貨幣史研究》(韓國研究院, 1975), 174~176\.

^{83) 《}英祖實錄》 권 53, 영조 17년 4월 임인.

영조 41년(1765) 正言 朴弼淳의 "일전의 강원도 금성현 명화적은 포청에 보고된 것이 300명 내지 400여 명이 되는데 본청에서는 겨우 5~6명을 체포하였다. 300명씩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데 그 수가 적지 않다"84)라는 지적처럼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 조직이었다. 명화적은 이러한 대규모 조직 내에 '守令', '邊將'이라 불리는 두목을 갖고 있었으며, 팔뚝에화인을 새겨 조직원 간의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85) 이들은 "전라도 정읍에서 적도 100여 명이 창을 들고 총포를 쏘며 다니는데 그 수괴는 갑옷을입고 말을 탔다"86)는 묘사처럼 상당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명화적은 두목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며 총포를 쏘아대고 일시에 소리를 치며 돌진하고",87) "북을 치면 진격하고 징을 치면 후퇴하여 마치 군사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88)는 묘사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명화적이 이처럼 강력한 무장력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약이나 鉛丸 등의 화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명화적은 이들 무기를 사사로이 만들거나 몰래 사들여서 확보하였는데, 이는 명화적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18세기 중엽에 화약과 연환의 분실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영조 30년에는 "이후 화약 30근이상을 분실하면 효수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이는 분실된 화약이 명화적에 밀매되어 이들의 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89)

명화적은 대규모의 조직과 무장력·전투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동료가 관군에 체포된 뒤에도 탈옥을 기도하였다. 즉 영조 6년 영흥부에 감금된 명화적 24명이 바깥의 적당과 결탁하여 옥문을 부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90) 영조 17년에는 곡산부에서 명화적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 사형에

^{84) 《}英祖實錄》 권 106, 영조 41년 12월 무진.

^{85) 《}備邊司謄錄》 43책, 숙종 15년 12월 15일.

^{86) 《}肅宗實錄》 권 54, 숙종 39년 9월 을사.

^{87) 《}備邊司謄錄》 124책, 영조 28년 8월 1일.

^{88) 《}英祖實錄》 권 39, 영조 10년 11월 갑신.

⁸⁹⁾ 한상권, 앞의 글, 502~503쪽.

^{90) 《}英祖實錄》 권 27, 영조 6년 9월 무자.

처하려는데, 그 도당이 옥에 돌입하여 동료를 빼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91) 명화적은 대낮에도 공공연히 관군을 공격하고 물화를 침탈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었다. 이들이 거리낌 없이 활동한 것은 영조 24년(1748)에 말을 타고 일산을 펼쳐든 채 討捕營이 있는 竹山을 공격하여, 공공연히 약탈을 자행하고 인명을 살상한데서 잘 드러난다.92) 그리하여 "명화적 수십 명이 깃발을 세우고 총포를 쏘면서 철원 읍내의 인가로 돌입해 들어오는데, 府使 黃震文은 벌벌 떨면서 끝내 나가 잡지도 못하고 곧바로 보고하지도 못하였다"93)는 묘사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명화적의 전투력이 지방관아의 치안력을 능가할 정도였다.

(2) 활동양상과 그 성격

명화적은 전시기에 비해 한층 발전된 조직력, 무장력, 전투력을 바탕으로 산악지대나 도서지방과 같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근거지로 하여, 도 성이나 한강 장시와 같이 물화가 집산되는 곳, 경기 내의 양주와 같이 교통의 요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명화적이 출몰한 산악지대는 강원도의 소백 산지대, 평안도 폐사군, 함경도 안변 등의 지역과 전라도의 변산 주변 읍인 정 읍·장성과 월출산 근방 등이다.94) 이러한 지역에 근거지를 확보한 명화적은 魏伯珪가 禁盜之弊를 논하면서 "도적들이 크게는 수십 명, 작게는 십여 명으 로 무리를 지어 서로 내통하는데, 백리 간에 서로 상응하며 경계를 넘어 연결 되어 있다"95)고 우려할 정도로 국지적인 활동영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거지를 확보하고 활동무대를 넓힌 명화적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명화적의 주된 활동으로는 첫째, 양반이나 토호 등 악덕지주가를 습격하여 지대와 고리대 등을 통해 착취를 자행해 온 것에 대해 보복하였으며 또한 포교·영장 등 악형을 자행하는 포악한 관리들의 만행을

^{91) 《}英祖實錄》 권 54, 영조 17년 11월 신사.

^{92) 《}英祖實錄》 권 68, 영조 24년 11월 을묘.

^{93) 《}肅宗實錄》 권 29, 숙종 21년 10월 임진.

⁹⁴⁾ 한상권, 앞의 글.

⁹⁵⁾ 魏伯珪,《存齋全書》 권 3, 封事 禁盜之弊.

응징하였다. 현종 8년(1667)에 士人 朴自三의 노비가 수백 금을 내고 노비살이에서 벗어난 후 명화적 일당을 끌어들여 박자삼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돈을 다시 탈취하였다.96) 영조 30년(1754)에는 서울의 서부 대현에 사는 양반沈海普의 집에 명화적 5~6인이 몽둥이를 들고 침입하여 방안에 쌓아둔 재화를 모조리 약탈해 갔으며,97) 영조 48년에는 명화적이 대낮에 도성에 출현하여 포교를 살해하였다.98)

둘째, 관부를 습격하여 물화와 군기를 탈취하거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각종 상납물을 약탈하였다. 숙종 29년(1703)에 瑞興의 봉수대를 명화적이 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였으며,99) 영조 14년에는 三登縣에 출몰한 명화적이 총포를 쏘고 횃불을 치켜들며 관부에 들어가 勅需庫의 돈과 재물을 약탈하였다.100) 명화적은 이처럼 관부를 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납물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숙종 17년 長端討捕使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로 상납할布物을 싣고 오는 사람들을 파주 읍내에 맞아들였는데, 명화적이 말을 타고 밤중에 돌입하여 무리를 인솔하고 온 頭目奴를 해치고 貢木을 탈취하였다.101) 영조 32년에는 명화적이 成歡의 주막을 공격하여 공주와 영동에서 올려보내는 軍布錢을 약탈하기도 하였다.102)

셋째, 유통로를 장악하여 상인들의 재화를 약탈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감 영으로부터 명화적이 주요 도로를 장악하여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잇따를 정도였다. 기호지방에서는 명화적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재화를 빼앗고 사람을 해치므로 상점들이 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열며 상인들은 무리를 지어다녀야 할 정도였다.103) 또한 명화적은 물화가 집산되는 장시에도 출몰하여 안성장시는 도적의 소굴이라 지칭될 정도였다.104)

^{96) 《}顯宗改修實錄》 권 18. 현종 8년 10월 기축.

^{97) 《}英祖實錄》권 82, 영조 30년 11월 정축.

^{98) 《}英祖實錄》 권 118, 영조 48년 4월 병자.

^{99) 《}肅宗實錄》권 38, 숙종 29년 3월 기미.

^{100) 《}英祖實錄》 권 47, 영조 14년 12월 무술.

^{101) 《}備邊司謄錄》 45책, 숙종 17년 정월 6일.

^{102) 《}英祖實錄》 권 88, 영조 32년 윤 9월 경자.

^{103) 《}正祖實錄》 권 21, 정조 원년 12월 기미.

^{104) 《}英祖實錄》 권 66, 영조 23년 12월 갑술.

이처럼 명화적의 약탈 및 공격대상은 주로 양반, 토호 지주층, 관료, 여각, 객주, 그리고 중앙 상납전이며 나아가서는 관아로 돌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이들에게 약탈 물품이 풍부하였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명화적 집단과 이들 사이에 존재하던 대립관계가 표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토호 지주층과, 봉건지주나 관료들의 유통권을 장악해가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던 여각, 객주에 대한 공격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상납전의 약탈이나 관아돌입은 국가권력에 대한 반항의 한 조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명화적의 활동은 일정 정도 반봉건 저항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105)

명화적은 이러한 약탈행위를 넘어서 세력을 결집하여 역모를 꾀하거나 변란세력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인조 7년(1629)에 李忠景과 奴 戒春과 幕同 등이 중심이 된 명화적 일당은 산골짜기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유민을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한 후, 崔瑩과 南怡將軍의 초상을 그려 제사를 지내는 한편조직과 강령을 갖추고 철원·평강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였다.106) 이들이 최영과 남이 장군을 받들고서 역모를 꾀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명화적의 활동이 갖는 정치 지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명화적은 향촌 내의 변란세력과 연결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종 12년(1671)에 錦山의 좌수 李光星과교생 禹明 등이 50여 명의 무리를 모아 관부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들은나아가 龍潭縣의 군기와 무주 적상산성의 관향곡을 탈취하여 덕유산에 근거지를 마련한 후 山行砲手, 승려와 결탁하여 세력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으나결국 발각되어 대부분 주살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체포될 무렵에 명화적 백여 명이 징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금산 관아를 공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명화적은 이들 변란세력과 결탁하고 있었다.1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에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따라 농촌에서 축출된 많은 유민들 중의 일부가 명화적으로 전화하여 지배층에 대해 격렬 히 저항하였는데, 이들이 지배층과 국가권력의 수탈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

¹⁰⁵⁾ 裵亢燮, 앞의 글, 204쪽.

^{106)《}仁祖實錄》권 20, 인조 7년 2월 계축.

^{107) 《}顯宗改修實錄》권 25, 현종 12년 11월 정축.

이 입은 계층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 몰락농민층이 명화적과 같이 도적의 형태로 사회모순에 저항하게 된 까닭은 농민들의 불만을 조직하여 표출할 수 있는 토양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국가의 지방지배력에 한계가 있어 이들이 산악지대나 도서지방을 활동 근거지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 명화적의 활동이 지배층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저항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도적활동이 사회모순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잉여물에 대한 약탈을 본질로 하는 까닭에 사회모순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망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이들은 생산기반으로부터 유리된 층이므로 투쟁이 지극히일회적이거나 즉흥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에 토대를 둔 지속적이며 견실한 투쟁이 되지는 못하였다. 셋째, 앞의 두 조건 때문에 도적집단은 농민과 결합하는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다.108) 요컨대 유민의 전화과정에서 분기된 명화적의 일부는 봉건사회 해체기에 반봉건 지향을 나타내기도하였으나, 그들은 반봉건 투쟁에서 동일한 이해기반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숙한 계층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명화적 활동은 중세체제 내의항쟁에서 19세기의 중세체제를 부정하는 민란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위치하여 조선 후기 민중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즉 조선 후기 민중운동은 18세기를 거치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여 19세기에 이르러 중세체제를 부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던 것이다.

(3) 정부의 대책

정부에서는 명화적 활동이 치성하자 五家統과 같은 향촌 인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購捕節目〉、〈捕盜節目〉등을 반포하여 포도활동을 독려하였다. 조선 전기 이래로 오가통조직은 인보조직으로서 도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도 대민 통제책의 일환으로 오가통조직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빈번하여 숙종 원년(1675)에〈五家統事目〉이 반포되고 영조 5년

¹⁰⁸⁾ 한상권, 앞의 글, 505쪽.

(1729)에는〈五家統法申明舊制節目〉등이 제정되었다. 한편으로 도적이 계속 빈발함에 따라〈구포절목〉을 개정하여 도적을 잡은 자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강화하였으며,109) 또한 일반 도적과는 다른 명화적이 치성함에 따라 명화적을 잡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별도의 포상규정을 마련하기도 하 였다. 즉《續大典》에 명화적 5명 이상을 체포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出身 또 는 閑良이면 加資하고 公私賤에 대하여는 면천하며 향리와 驛吏는 면역시켜 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110)

한편 명화적이 무장을 하고 단을 형성하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자, 지배층의 토포방식도 단순한 治盜策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작전과 같은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수령이 겸하던 치도 임무를 영장에게 이관시키기 시작하는 17세기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양서 지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兼營將體制를 탈피하고 독립적인 영장을 신설하였으며 더 나아가 병영으로 하여금 토포임무를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관동 지방에서는 회양에 防守使를, 그리고 철원에 방어영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관북과 연결되는 요충지를 장악하고자 하였다.111)

한편 오가통제는 국가 차원에서 끊임없이 시행절목이 반포되고 사안에 따라 재정비되고 있었으나 수령이 예하 군현의 통치를 위해 자의적으로 조직하여 반포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 차원에서 실시된 오가통절목은 법전과숙종대〈오가통사목〉에서 대체적인 틀을 따오고 시의에 따라 세부적인 조목을 첨가하였다. 지방 차원에서 논의된 安鼎福의 鄕社法은 향혼조직을 통한 이시기에 도적 대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향사법에서는 도적의 발호에대해 자체적인 향혼방어 대책으로 戶마다 활·창·총 가운데 하나의 병기와木棍을 준비하고 統마다 炬·포승 등을 비치시켜 도적이 침입할 때 자체 방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도적 토벌을 위한 실질적인 무력 담당자를 설정하여 추포와 기찰을 위임하며, 적도의 무리가 침략할 때는 이들에게 양식을 지급하

^{109) 《}肅宗實錄》 권 29, 숙종 21년 12월 병진.

^{110)《}續大典》刑典 捕盜.

¹¹¹⁾ 한상권, 앞의 글, 517쪽.

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鄉社牌式에 따라 통패·향사패의 사용을 통해 향촌민의 출입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각 호는 향장이 분급한 표로서 私記를 사용하고, 각 장은 官票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향촌민과 도적이 혼유하여 분별하기 어렵고 향촌민이라 할지라도 적과 내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무엇보다도 강력한 통제로 적과 구별시키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112)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수령의 포도활동을 독려하였으나 수령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영조 17년 (1741)에 곡산부에서 명화적이 관아에 돌입하여 동료를 빼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곡산부사는 겁을 먹고 거짓 보고하였으며, 감사도 장계를 올려 논죄하지 않고 은폐하려다 발각되어 곡산부사와 함께 처벌을 받았다. [113] 이러한 폐단은 수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禹夏永의 "포교, 포졸들이 도적을 잡아야 할 때면 진짜 도적은 잡지 못하고 유개 중의 한 사람을 대신 잡아들여 책임을 모면한다" [114]라는 지적처럼 말단의 포교, 포졸들에게서도 빈번하였다. 나아가 일부 포교들은 도적을 잡기보다는 도적과 결탁하여 도적행위를 조장하고, 일반 민인에 대한 탐학에 앞장섬으로써 이 시기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15]

요컨대 정부의 도적대책은 생업수단을 갖지 못한 유민들이 생활의 한 방편으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타개책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유민은 농민층 분화의 산물이었으므로, 토지문제나 부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민을 안집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유민이 중심이 된 명화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다.

〈邊柱承〉

¹¹²⁾ 吳永敎, 앞의 글.

^{113) 《}英祖實錄》 권 54, 영조 17년 11월 신사.

¹¹⁴⁾ 禹夏永,《千一錄》5, 化俗 流丐.

¹¹⁵⁾ 魏伯珪,《存齋全書》 권 3, 封事 禁盜之弊.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라'

1) 18세기 초 민중의 동향과 변산군도

16·17세기 조선왕조는 잇따른 전란과 정변을 극복하면서 체제유지에 성공하였다. 전국적 차원에서의 활발하고 신속한 농지개간과 농법개선, 상품화폐경제의 확대는 국가재조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노비추쇄사업이나 호패법·오가작통법도 부분적이나마 신분제와 향촌지배질서의 동요를 방지하고 국가의 사회통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여기에 주자학의 명분론과 의리관은 중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통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은 물론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사회의 활발한 경제복구와 상품경제의 발전과 함께 지주적 토지소유가 확대되면서 일부 농민은 경영과 상품화를 통하여 성장하기도 하였지만 다수 농민은 토지가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처지로 전략하였다. 당시 지주는 수확물의 절반에 이르는 작료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田稅・貢賦 등을 작인에게 전가시켰으며, 심지어 수확 후에 짚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작권을 보장하는 일도 있었다. 전호농민은 抗租로써 맞서기도 하였으나, 봉건권력을 배후로 한 지주는 관권을 동원하여 작권을 빼앗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한 '錢荒'으로 농민의 자립과 성장은 한층 곤란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화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궁박상태에서 그 생산물을 헐값으로 팔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지주・부호 및 상인에게 부채를 지게 되면서 얼마되지 않는 토지나 가옥마저 전당잡히게 되었다. 전호농민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와 지주 본위의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민에게서 나오는 재화가모두 위로 흘러가서' 민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사회생산력의 발전은 일부 농민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면서 동시에 대규모 빈소농민을 양산하였다. 또한 경작지마저 얻기 어려운

¹⁾ 李 瀷、《星湖僿說》 권 16, 人事門 民貧.

농민도 늘어났는데 이들은 농촌에 남아 형편이 나은 농가의 머슴이 되거나아니면 지주 양반호에 고용되어 얼마간의 노임을 받아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다수 영세 농민층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내핍생활을하면서 농법을 개량하고 환금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리고 山地를 개간함으로써 농민적 잉여를 비축하며 시장경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자립경영·자력생활을 위한 농민의 생산활동은 활발하였다. 산간과 절도에서의 개간과 산간벽촌에까지 확대된 장시 등은 이같은 농민적 생산활동의 귀결이었다.2)

그러나 흉년을 당하면 많은 농민은 유랑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많았다. 정부에서 흉년에 실시하는 荒政이 빈소농민을 구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당시 부세제도의 모순은 일시적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동과 괴리되는 바의 구조적·제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중세적 법제와 원칙을 폐기함으로서 다시 말하여 大變通을 통해서 타개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은 사회변동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민생현실과 민원을 대폭 수용하면서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 신분제의 원칙과 결부법・양전법의법전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小變通의 차원에서 그 운영개선을 추구하였을따름이었다. 국왕을 정점으로 한 관료 지주계급은 國虛民貧을 타개하고 부국 강병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세적 원칙과 골격을 견지하는 방향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흉년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황정에서 국가와 민의 대립·갈등관계는 한층 노골화되었다. 田政에 있어서 감세조치는 경작할 토지조차 없는 농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무릇 정전법이 폐한 뒤로 부익부 빈익빈하여 … 평민은 立錐의 땅도 없게되고 오로지 富人의 논밭에서 봄 여름 열심히 경작할 따름이다. 가을에 가져가는 것은 소출의 반밖에 안되니 국가가 부세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빈민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李 瀷,《星湖僿說》권 11, 人事門 什一賦).

²⁾ 金容燮、〈量案의 研究〉(《朝鮮後期農業史研究》1, 一潮閣, 1970).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빈소민에게 유리하도록 군역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각 아문의 재정수요는 군포징수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大殺之年'과 같은 흉년에도 군포세는 연기해줄 뿐이지 탕감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3) 따라서 흉년을 당하면 각종 부세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농민은 유랑하거나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세기 초에는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흉년이 아닌데도 많은 농민은 농촌을 떠나고 있었다. 호남어사 李匡德은 지독한 흉 황이었던 영조 원년(1725)과 그 이듬해에는 진휼이 있었고 또한 부세를 연기해주었기 때문에 유산하지 않았지만 영조 3년에 흉년에 거두지 못한 부세를 독려하자 호남인은 '一時盡空'하게 되었다고 하였다.4) 또한 경작할 토지가 없고 호적에도 빠진 의지할 데 없는 飢民・丐乞이 유랑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유민이라고 해도 반드시 걸인은 아니었다. 숙종 29년 (1703) 도성에 집결한 유민을 구휼하여 원래의 지방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지닌 領送使는 유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작도 유민을 모아보니 대부분이 온 가족을 끌고 옮겨온 實民으로 종전과 같이 1, 2명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무리와는 같지 않습니다(《肅宗 實錄》권 38, 숙종 29년 2월 신축).

유민은 산간벽지로 가서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절해고도나 연안의 어민이되기도 하였지만, 지방장시나 포구로 가서 생활자금을 얻고자 하였다. 18세기 초 유민들은 대거 도성으로 유입하기도 하였다. 이 때 유민문제는 이미한 지방 한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 내지는 도성의 치안유지차원의 중대사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농민 유랑의 그 배후에는 국가의 부세에 저항하고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강한 자는 도적이 되고 약한 자는 승려가 된다고 일컬어지기도 하였

^{3) 《}備邊司謄綠》 79책, 영조 2년 4월 1일.

⁴⁾ 李匡德,《冠陽集》 권 9, 湖南御使書啓別單.

지만, 호적에서 빠지고 군역을 회피하려는 한에서는 犯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흔히 적도로 취급당하였다. 유민이 근접하면 稍實한 마을의 주민은 그들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유민이 도적이 되는 길이 여기에서 열리고 있었다. 변산적으로 생포된 3인의 적도의 공초는 그 구체적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東伍로 입적된 李應白(41세)은 평소에 東伍軍籍에 들어있는 것을 싫어하던 중 黔毛浦로 正兵布를 납부하러 갔다가 적도 17명을 만나 변산으로 따라가고, 驛奴이나 驛奴案에 들어있지 않은 全乙生(38세)은 어느 한 곳에 의뢰할 데가 없는데 홍덕으로 소금을 짊어나르다가 영광인 김총각에 포섭되었으며, 함평 관아의 사령이었던 金旬必(37세)은 죄를 지어 도망하였다가 김총각과 서울 사람 백서방을 만나 '우리를 따라오면 의식은 족하다'고 하는 말에 적도에 들었다 (《戊申別謄綠》 1책, 3월 18일 全羅監司 鄭思孝狀啓).

이에 의하면 적도가 되는 동기나 계기는 바로 '군역회피, 관가득죄 및 無籍無賴' 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초에 이르면 적도는 "도성 주위를 수십리나 둘러싼 형세를 이룰 만큼"크게 일어났다. 5) 적도는 그 세력이 커짐에 따라 내부 체계를 세우고 무장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북로로 유배되어간 자가 그에 들었다"고 하듯이 지략을 갖춘 인물 등도 가담하였으며, 정읍 같은 곳에서는 "백 명 정도가 槍을 들고 放砲를 하며 괴수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탔다"고 하였다. 6) 당시의 적도는 공공연하게 관가를 침범하고, 향리군관을 살해하고 감옥을 부수며, 封物과 군기를 탈취하였으며 심지어 治盜를담당한 관리의 가속에게 보복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적도의 다양한 존재형태 및 행동영역의 확대과정은 봉건통치권력의 기능을 저해하는 방향을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국가로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였다. 특히 그것이 농민층 분해에 따른 유리민의 증가와 관련된 이상 향혼사회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중세권력의 불안정을 가져올 주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었다.

^{5) 《}肅宗實錄》 권 54, 숙종 39년 윤5월 갑자.

^{6) 《}肅宗實錄》 권 38 하, 숙종 25년 12월 갑술ㆍ권 54, 숙종 39년 9월 을사.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정세의 불안과 도적의 만연에 대하여 여러 가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민원의 핵심이었던 군역제를 釐正하기 위하여 '良役均一化'정책을 관철하고 '滅布均役論'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빈궁자의 구제를 위하여 '賑恤事目'을 제정 실시하였다. 또한 백지징세 등을 방지하고 신기전에 과세함으로써 전결과세에서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양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민생의 안정, '균부균세'가 기약될 수는 없었다. 良役釐正은 양역간의 현저한 불균현상을 해결하였으나 양역을 극력 회피하려는 계층의 불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감포균역론은 군관 명호를 새로 얻어내거나 혈역에 투속한 세력 그리고 사족의 신분을 모칭하던 계층에 대해 낭패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편과적·고식적 진휼사업의 개선은 진휼 전곡을 비축한다는 명목으로 부민을 침탈하는 통로를 열었다.

특히 실시 초기부터 "국가에 이롭고 민에는 해롭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양전사업은 삼남 각처의 민심을 동요시켰다.7)양전사업에서 山火田이나 海澤의가경전 등이 원결로 새로 파악되어 인조 때의 甲戌量田에 비하면 전라도는 4만 3천여 결, 경상도는 3만 7천여 결이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전이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의 토호 및 농민들은 고의로 陳廢로 하였다가 양전이 지난후에 還起할 정도로 양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저항하였다.8)자신들의 경지가出稅田으로 치부되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이다. 양전사업은 산구릉이나 해안의간석지 등을 개간하였던 농민이나 이를 주도한 토호들의 반감을 유발하였다.

結負數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民怨은 오히려 심하였다. 세상 사람의 말이 三南에서 인심을 잃은 것은 改量 때문이라고 하는데 믿을 만하다(《景宗修正實錄》 권 1, 경종 즉위년 10월 기해).

당시 정부는 이상의 대민 회유, 민정개선의 방책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강경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적도에 대한 行刑을 강화하였

^{7) 《}備邊司謄綠》 72책, 숙종 45년 9월 16일.

^{8) 《}量田謄綠》 경자 6월 29일 · 9월 20일.

다. 즉 종전에는 적도는 세번 자복한 후에 처단하였는데 도적 행위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두번 자복으로 바로 처단하도록 한 것이다.9) 또한 수령의 군사권이 영장에게 귀속됨으로써 지방의 치안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吏奴作隊'를 통하여 수령에게 이를 지휘하여 치안에 대비하게 하였다.10)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도성을 개축한 것은 '도성방위론'에 따른 군사적목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성으로 많은 유민이 유입되고 도적이 들끓게된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11)

이러한 강경책은 부분적으로 효력이 있었겠지만 민심의 이탈을 조장하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 형률강화는 많은 無辜者를 낳았다.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그 관리기구로 경리청을 설치 운영한 것은 지방재정을 고갈시킨 하나의계기가 되었다. 즉 북한산성을 축조하기 이전 軍餉은 각 읍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방의 군향을 경리청에 귀속시킴으로써 도성 인근의 몇 개 읍에는 많은 곡식이 유입되어 '穀多'의 풍족함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은 그와 정반대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12) 또한 경리청은 그 본곡을 '立本取息'하여 확충하여 갔는데 전라도 여러 지방 중에서도 부안지방은 혹독한 피해를 감수하였다.13)

이러한 사정에도 당시 정부는 부안의 변산 및 안면도에 대한 강력한 '摘 奸'책을 추진하였다. 원래 변산·안면도 등지는 정부가 松木을 조달하기 위 해 민간의 벌채, 경작을 허락하지 않았던 국가적 養松處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다수가 잠입하여 재목을 베어 도둑질하고 전토로 개간하며 鹽盆 을 개설한 결과" 국가의 공용 船材마저 조달하기 어렵게 되었다.¹⁴⁾ 당시의 농법개선, 인구증가, 농지수요의 증대에 따라 임야가 개간되는 상황에서 안

^{9) 《}肅宗實錄》권 39, 숙종 30년 정월 을축. 《秋官志》3편, 考律部 續條 竊盜.

^{10) 《}肅宗實錄》권 38 상, 숙종 29년 4월 기묘·권 60, 숙종 43년 9월 무오. 《備邊司謄緣》60책, 숙종 36년 10월 7일·11월 29일.

¹¹⁾ 李泰鎭,《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韓國硏究院, 1985).

^{12) 《}英祖實錄》 권 8, 영조 원년 11월 병신.

^{13) 《}備邊司謄綠》 70책, 숙종 43년 5월 27일.

^{14) 《}備邊司謄錄》 49책, 숙종 21년 정월 23일 · 60책, 숙종 36년 11월 13일.

면도 변산 등도 그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변산반도는 제염업, 사기업, 선박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목재수요가 크게 증대하여 소나무가 대량 벌채되었던 것이다. 국가는 이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처를 취하였다. 숙종 21년 (1695)부터 정부는 경내의 민가를 구축하고 분묘를 훼파하고 목재수요가 많은 염분과 사기점을 금지하는 등의 '禁松'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숙종 42~45년간에 이르러 정부는 비변사의 낭청을 파견하여 보다 강압적인 금송정책을 추진하였다.15) 숙종 42년 변산지방에는 금송구역 경계(禁標) 내에 민가 235호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가경전이 있었으며 몰래 묘를 쓴 자리(偸葬處)도 36군데나 있었다. 또한 금표 밖 5리 이내에 염분 13좌, 사기점등 여러 수공업 제조처가 180호에 이르고 있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사기점 27호를 구축하고 염분을 훼파하였으며, 투장처를 옮겨가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금표 안에 있는 민가 120호를 산직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퇴거시켰다. 가경전은 인근의 黔毛浦와 格浦에 귀속하였다.

숙종 45년에 이르면 안면도의 경우는 전반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변산지방의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정부가 지시한 '禁松作契'는 실행되지 않았고, 冒耕地는 더 늘어가는 형편이었으며, 여전히 투장처는 30군데나 더 생겨났던 것이다. 염분 2좌도 더 개설되었다. 어떤 양반은 변산 밖에 살면서 송목을 벌채하여 자기 배로 인근의 무장으로 운반하여 팔고 있었다. 정부의 2차 적간은 보다 강경한 것이었다. 경내 양반 43호가 구축되고, 사기점 등 46호가폐쇄되었으며, 薪炭을 매장한 곳은 흙으로 쌓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민간에게서 나무를 자를 만한 도끼까지 몰수하였다. 이러한 규제는비단 변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변산과 인근인 무장지방의 제염업도 억압당하였다. 왜냐하면 무장의 제염업은 그 소용되는 목재를 변산에서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변산뿐만 아니라 인근 무장 등지의 제염업, 사기제조업 그리고 임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15) 《}備邊司謄綠》 69책, 숙종 42년 정월 27일·12월 26일 및 72책, 숙종 45년 정월 17일.

무장의 허다한 鹽盆은 금송산과 한 포구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 무장의 염분을 참작하여 줄인다면 禁松養木의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備邊司謄錄》72책, 숙종 45년 정월 17일).

정부는 금송책의 추진과정에서 이 지역 상공업을 강력하게 억제 금압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풍부한 자원과 각종 산업을 영위하였던 주체로서의 토호 부민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제2차 적간 이후에도 사기점 46호와 염분 15좌는 여전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같이 변산적간이 곤란하였던 것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닿고 산이 높고 계곡은 깊어 매우 험준한데 병영이나수영이 모두 이틀 사흘 거리가 되고 또한 각 진이 이백 리, 사백 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변산지방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더하여 치안력이 미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16)

이처럼 변산지방은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의 억압적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지역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지방의 유력한 토호들은 수령에 대항하다가 오히려 치죄를 당하였다. 벌목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었던 高應良은 '수령을 모함하였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당하였다.17) 그러면서도 당시 집권층은 변산에서의 금송 지구 밖의 양안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내수사로 하여금 절수하도록 배려하였다.18) 이는 궁방전의 억제라고 하는 원칙에 의하여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재지사족, 토호층에게 더한층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더욱이 경리청의 차인배들에 의한 입본취식의 참화가 매우 심하였다. 변산적간의 추진은 결국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양전사업에서와 같이 민심의 이반과 토호의 반발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지역에서 國과 民의 대립은 그만큼 심화되었다.

18세기 초 강온을 병행하며 시행된 일련의 정책은 노론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모순타개책으로 당시의 사회모순·사회갈등이 치유될 수는 없었다. 중세사회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었고, 그에따른 '大變通'·'大更張'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론의 지배정책은

¹⁶⁾ 趙文命,《鶴岩集》 권 3, 申請乞休仍陳湖南諸島事宜疏.

^{17)《}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7,7월 4일 慎後三供.

^{18) 《}備邊司謄綠》 82책, 영조 3년 10월 1일.

민심의 이탈, 사회 제세력의 이반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부세제도의 이정책은 농민의 몰락을 더 한층 촉진시키는 일면 군역제 개혁론은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稍實'민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다. 이 시기 민심의 동향은 조선왕조의 국가재조책 추진의 사회적 동력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실제적 과정에서는 위협적 난관이 되었다. 민의 저항은 중세적 토지소유제의 변동, 중세적 신분제의 해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발전의 불가피한한 과정에서 분출하는 것이었지만, 정부가 견지하는 중세적 규범과 법제의시대적 한계 속에서 더욱 노골화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여러 사회 계층의 폭력적 저항으로 표출되었다. 이 시기에들어서면 그것은 매우 빈번해졌다. 경종 원년(1721) 4월 石城・懷仁・樂安등의 수령이 봉변을 당하고 이어서 태인현에서는 백성이 관문 앞에 모여울부짖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19) 같은 해 6월 청주에서는 관창에 난입하여환곡을 빼내 마음대로 민간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있었다.20) 감옥을 부수고죄수가 도망가는 사건도 빈번해졌다. 경종 즉위년 6월 典獄署에 갖혀 있던명화적 16명이 탈출하였고,21) 경종 2년에는 진주에서 적도 70여 명이 탈옥하였다.22) 경종 3년 4월에는 청주지방에서는 "대신과 중신의 墳山에서 作變하고 掛書를 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23) 군정향교의 殿牌가 절취되거나 봉변을 당하였다.24) 陵園의 소나무를 베냈다고 하여 유형에 처해진 사노는 귀환하여 長陵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였다.25) 경종 원년 영천지방에서는 토호가 落松에 대해 원망을 품고 일향에 통문을 돌리고 환곡을 받아가지 못

^{19) 《}景宗實錄》 권 3, 경종 원년 4월 경신.

^{20) 《}景宗實錄》 권 4, 경종 원년 6월 기미.

^{21) 《}景宗實錄》 권 1, 경종 즉위년 6월 을축.

^{22) 《}景宗實錄》권 10, 경종 2년 11월 정미.

^{23) 《}景宗實錄》권 12, 경종 3년 4월 갑술. 이것은 당시 세력가가 함부로 분묘를 조 성하고 산송을 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24) 《}學校謄綠》 8책, 경자(경종 즉위년) 12월 6일·계묘(경종 3년) 3월 16일. 이러한 일은 額外校生이 군정·군보로 차정되어 반발하였거나 향리층이 수령을 협박하 고 경질시킬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자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25) 《}英祖實錄》 권 8, 영조 원년 10월 경인 · 11월 병오.

하도록 방해하고, 稜杖을 갖춘 무뢰배를 이끌고 관정에 돌입하여 향소를 구축하였다.²⁶⁾

영조 즉위년(1724) 영덕 지방에서는 수령과 향소에 대하여 향리가 무력으로 대항한 사건이 벌어졌다.

호장, 이방, 사령, 관노가 읍성을 포위하고 도로를 차단하여 관에 부세를 납부하러 가던 村氓을 내쫓고 장계를 가지고 감영에 가는 衙奴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향소를 위협하여 黨에 들어오도록 하고 듣지 않으면 그 妻를 결박하여 강제로 맹서를 받아냈다. 마침내 병기를 갖추고 관문에 돌입하여 흉언으로 수령을 공갈한 사건이 있었다(《英祖實錄》권 1, 영조 즉위년 9월 기사).

영조 2년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탐욕스런 목사를 구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주에서 刺使를 내몰았다. … 삼남에 황년의 재난이 극심한데 貪風이 크게 일어나 목민관이 백성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광주민이 난리를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다(《英祖實錄》권 9, 영조 2년 3월 임인).

영조 즉위 이후 대흉년이 들면서 국가와 민의 대립 양상은 마침내 민에 의하여 목민관이 내쫓기는 초기적 형태의 민란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당시의한 정부 관료가 "점차 나라는 나라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서로 막연하게 되어 상관없이 간섭하지 않으니 어찌 백성이 실망하지 않고 난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지적은 민심 이반의 정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27) 이러한 상황에서 '邊山賊'의 소문이 나라 안에 크게 유포되었다.

영조 원년의 흉년으로 호남에는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일부는 군도가 되었다. 이들 군도는 무장력을 확보하고 내부의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스스로를 '綠林黨'으로 자처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그들 세력을 보전 확대시키기 위해 일정한 근거지를 확보하여 나갔다. 전라도에서의 근거지는 대체로 변산과 월출산 그리고 지리산 등지였는데, 그 세력이 강대하여 절 한채를 전

^{26) 《}景宗實錄》 권 4, 경종 원년 6월 을미.

^{27) 《}景宗實錄》 권 3, 경종 원년 4월 경신.

부 빌려 겨울을 지내면서 백주에 장막을 치고 그 위세를 부려도 관에서는 토벌하려고도 하지 않았다.²⁸⁾ 당시 전라도에는 '劇賊'으로서 '자고로 유명한 金단과 魏주고쵸'가 변산과 지리산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부안에는 金衡이란 적수도 있었다.²⁹⁾ 이 중에서도 변산반도는 녹림당의 가장 강력한 근거지가 되고 있었다. 변산반도는 지리적 환경과 교통상의 편리함 그리고 여러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던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유민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변산적'은 "도당을 충원하는 방식이 각 읍이 양민을 수괄하여 첨정하는 것"과 같이 하였는데, '作賊'의 무대를 부안·고부로 하지 않고 정읍·장성을 그 대상으로 삼았던 바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곳을 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인거 주민을 기반으로 근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³⁰⁾

이같은 군도는 '明火作賊'만을 일삼는 것은 아니었다. 張吉山은 상인 세력, 승려 및 일반 민중과 연결된 무장한 馬商團이었다.31) 숙종 30년경 제주 근해에 "밤에는 소나 말을 盜殺하고 낮에는 바다로 나가 떠다니던 海浪賊"도 실제로는 관아에 납부해야 할 어선세 등을 거부하며 전라도 연안에서 활동하는 무장력을 갖춘 潛採漁船團으로 밝혀졌다.32) 일부의 유파는 경향의 토호·세가와 연결을 가지면서 경제적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때 도적을 다스림에 맹위를 떨친 權高이란 관료는 숙종 37년 '排淸掛書'의 수범으로 지목되었을 때에 "근래에 다스린 적도는 모두 재력을 갖추고 경향의 세가와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하였다.33) 그 자신도 치도 및 기타의의도를 가지고 적소에 동지자를 포섭하고 있었다.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이었던 李頤命조차도 외딴 섬에서 자행된 '私鑄'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44) 李瀷도 각처의 적도와 窩主를 다음과 같이 설과한 적이 있다.

²⁸⁾ 정석종, 〈영조 무신란의 진행과 그 성격〉(《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126~127쪽.

^{29) 《}推案及鞫案》 戊申逆獄推案 권 3, 4월 7일 羅崇大供・권 8, 7월 7일 姜謂徵供.

^{30) 《}備邊司謄錄》 82책, 영조 3년 10월 24일.

³¹⁾ 鄭奭鍾,〈肅宗年間 僧侶勢力의 擧事計劃과 張吉山〉(《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32) 《}肅宗實錄》 권 39, 숙종 30년 5월 계묘.

^{33) 《}肅宗實錄》 권 50 상, 숙종 37년 7월 계축.

^{34) 《}景宗實錄》 권 10, 경종 2년 11월 임진.

奧主란 지금의 窩主인데 적도의 주모자를 일컫는다. 항상 人主의 좌우에 있으면서 안팎으로 호응하고 변란을 양성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다(李漢,《星湖僿 說》권 10, 人事門 奥主)

이들 녹림당은 각처의 토호 양반 등과 연결을 맺고 있었는데 호남의 경우에는 고부의 宋賀, 부안의 金守宗(金守亨) 및 나주의 저명 가문의 후예였던 나씨 일족 등이 대표적이었다.

송하는 숙종 38년(1712) 호남지방에서 도적이 크게 일어나고 민심이 동요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남 인재를 수용하려고 하였을 때 '별천'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태인현의 환곡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시무에 밝았고 둔갑술·비술을 구사한다는 소문도 돌았으며 불가와도 인연이 있었다. 그는 지방의 양반과 체결하면서 남원·임실·고부 등지의 녹림당을 지휘하고 있었다. 양반 중에는 과거를 준비하거나 부호도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녹림당과 연계하면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35)

부안 변산의 김수종은 변산에서 조선업을 일으킨 거부로서 그 노복이 살고 있는 집이 60여 호에 이르렀다. 그는 하동·순천·진주지방의 토호와도체결하였으며, 훈련원 주부를 지낸 해미의 박계상과도 연결을 맺고 있었다. 이 토호들은 地師나 乞儒를 매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한 때 운봉에 살다가 용인으로 옮겨간 鄭八龍(혹은 鄭八熊)이란 적수가 살기도 하였다. 정팔룡은 변산 靑林寺에서 '靑林兵'이란 칭호를 가지고 적도를이끌던 인물이었다.36)

나주의 나씨 일문이었던 羅斗冬·羅晚致·羅崇大 등이 오랫동안 양병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녹림당과 연결되었음을 말한다. 이들 중 나만치는 "추노나 지관를 빙자하여 그 발길이 팔도 어느 곳에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삼남의 인물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효행포상자로 선정되어 정부가 상

^{35) 《}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11월 24일.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4,4월 20일 宋賀供·4월 23일 蘇檉供 및 권 5,5월 2일 成一龍供.

^{36)《}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8,7월 10일 姜渭徵供. 《戊申別謄錄》5型,8월 21일 河東府使牒呈內 李命根招辭.

으로 내린 미포를 거절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37)

변산 등지의 녹림당은 전라도의 경계를 벗어나 경상하도, 경기도의 토호양반 등과도 체결하였다. 조선 중기 저명한 성리학자이었던 鄭蘊의 직계손으로 노비와 전토가 매우 많아 그 호부가 일도를 움직였던 鄭希亮은 그 심복鄭倬을 통하여 송하와 결탁하였다. 38) 또한 이웃에서 거처를 모르고 죽은 줄로 생각할 만큼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명화적의 수괴가 되어 '鄭都令'을 자칭하였던 鄭世胤도 호남 녹림당과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원·금구 등지의 토호와도 체결하였던 그는 鄭麟趾의 후손으로 신분은 業儒로 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理學者'로 인식되고 있었다. 39) 그는 경종 즉위에 즈음하여 나주의 토호세력을 통하여 호남의 녹림당과 연결을 맺고 영조 즉위년(1724)에 이르면 정치적 행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녹림병 약간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침내 600~700명에 달하여 삼남에서 한 곳을 택하여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나숭대가 녹림병 수백 명을 모아 부응하고자 하였고 세윤이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草冠之計로 시작하였는데 도당이 무리를 이루었고 얻은 바가 많아진후에는 비로소 모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推案及鞫案》戊申遊獄推案 권 3,4월 14일 安愰供).

그리고 정세윤은 부안의 김수종과도 직접 체결하였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삼남 한 곳에 근거하여 정치적 진출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산반도에서 많은 유민이 모여들고 녹림당의 세력화는 殿牌作變·斯文紛亂·吏胥作變·民人作亂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사족층은 "국가의 정령이 이렇게 어지러우니 나라가 머지 않아 망하지 않겠는가"라든가, "인심이모두 변하여 난리를 생각한지 오래되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40)

^{37)《}戊申別謄錄》2책,3월29일 南漢巡撫使金東弼狀啓內 尹熙慶招辭.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2,4월7일 羅崇大供. 《忠孝謄錄》 권6, 계显3월20일.

^{38) 《}勘亂錄》권 2, 3월 정축.

^{39)《}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7,6월 17일 閔純孝供、 《南征日錄》 권 2,3월 24일.

2) 무신란의 발단과 전개

(1) 18세기 초 정치정세와 '무신당'의 결성

이 시기의 유민의 증가와 여러 사회세력의 저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세사회의 해체를 예시하는 구체적인 징후들이었다. 민심이반은 중세적 규 범과 법제를 부정하는 방향에서 중세사회의 해체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지배세력은 국가재조의 방안을 마련하고 민심이반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끊임없는 대립, 갈등을 거듭하였다. 본래 붕당대립은 각 정파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전향적 시책이 준비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 았다. 예송·사문시비 등은 이 과정에서 자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한 명분적 이론투쟁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는 중세사회 해체의 징후가 구체화하고 피지배층의 저항이 심화되는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잦은 換局으로 귀결되었다. 일당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면 다른 붕 당은 완전히 배제되는 정치행태가 반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붕당대립은 국왕을 둘러싼 궁궐과 훈척이 정치투쟁의 일익을 담 당하게 되면서 '臣强', '干犯名義', 그리고 마침내 '東宮保護', '護逆' 등의 쟁점 을 중심으로 '忠逆'의 문제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희빈 張氏의 賜死에 이은 동궁(경종)의 보호 문제와 세자 즉위 이후의 후계구도를 둘러싸 고 조선 후기 지배층은 상호 불용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당론에 의한 국 왕 선택으로 치닫게 된 붕당대립은 기왕의 정치지형의 대균열을 가져왔다.

숙종 36년(1710) 庚寅換局 이후 국왕의 선택을 둘러싼 붕당 대립은 숙종의 지지에 의하여 일단 노론측의 우세로 귀결되었다. 이후 노론정권은 동궁을 폐출할 것이라는 유언을 진정시키는 한편 숙종 42년 丙申處分으로 노론과 소론간의 사문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그 이듬해에는 丁酉獨對를 통하여 동궁 (경종)은 즉위시키되 延礽君(영조)을 세제로 책봉한다는 '先卽位後冊封'의 당론

^{40)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2, 3월 28일 李翼觀・李日佐對質・권 5, 5월 12 일 金璋供.

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론 당국자들은 숙종 말년에 이미 경종 즉위 이후에도 자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경종 즉위 이후 노론은 생모 희빈 장씨의 所生之恩을 회복해야 한다는 남·소론계의 주장을 봉쇄하면서 세제책봉의 명분을 위하여 淸使와 교섭하여 연잉군을 접견하도록하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하다가, 왕대비로부터 "효종대왕의 血脈으로 선대왕(숙종)의 골육은 主上과 연잉군뿐이다"는 언문 수교를 얻어내서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하는데 성공하였다.41)

그러나 당시 소론은 노론의 일사분란한 정치행동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소론이 서인과 남인의 대립과정에서 서인 훈척의 가혹한 남인 탄압에 반발한 서인 신진사류가 남인 소북계를 포섭, 제휴하면서 정치세력화되었던 까닭에 남인계 수용문제나 희빈 장씨 사사문제 등에서 내부 알력이적지 않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는 南九萬이 崔錫鼎의《禮記類編》을 비판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42》또한 朴世采와 그 문인은 노론으로 '전향'하였다.43》경종 즉위를 전후하여 趙泰耉・崔錫恒・李光佐・趙泰憶이조정에 참여하였지만 이들의 노론정권에 대한 견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남인측은 더한층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 庚申換局(1680)으로 세력이 약화된 남인은 己巳換局(1689)으로 집권하였지만, 이미 청남・탁남으로 나누어 졌다 가 甲戌換局(1694) 때 정치권에서 배제되고 이후 희빈 장씨의 사사문제에 연 류되어 붕당으로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었다. 그리하여 숙종 말년 이후에는 정권에서 거의 도태되기에 이르렀던 남인은 노·소론간의 극한 대 립의 와중에서 붕당재건 혹은 정치참여의 명분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 었다. 이 때 일부의 남인 중에는 기사환국 당시 閔妃 폐출은 국왕의 전권으 로서 국왕에게 일시적 오류가 있는 것이지 己巳大臣(權大運・睦來善・閔黯・李 義徵)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왕권에의 간섭이라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인의 경신・갑술 연간에 정치적으로 퇴진한 것은 宗親 및 宮

^{41) 《}景宗實錄》 권 2, 경종 즉위년 11월 경인 · 권 4, 경종 원년 8월 무인.

^{42) 《}肅宗實錄》 권 47, 숙종 35년 3월 계해.

⁴³⁾ 정경희, <17세기 후반 '전향노론'학자의 사상>(《역사와 현실》13, 역사비평사, 1994).

禁勢力과의 연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반성하여 별파를 선언하는 일파가 있었다. 이들은 경종 2년 무렵부터 전자의 입장은 門內派 후자의 입장은 門外派 그리고 여타 관망파는 跨城派로 분류되었다.44)

이같은 상대 붕당의 약화, 분립의 상황에서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하는 데성공한 노론은 그 여세를 몰아 대리청정까지 실현코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국은 일변하였다. 소론계가 총공세를 취하고 남인이 가세하였으며 노론 내의 일부 세력(權相游・朴致遠)까지 반발하여 상황은 급전하였다. 45) 경종원년(1721) 12월 金一鏡・金眞儒・朴弼夢・徐宗厚・尹聖時・鄭楷・李明誼의辛丑疏로 노론이 퇴진하고 소론정권이 성립하였다. 이후 睦虎龍의 고변에 따라 노론세력은 4대신이 죽임을 당하는 등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辛壬獻).

여기에는 외방 사족의 노론을 규탄하는 언론과 적극적 행동이 한몫을 하였다. 일부의 유생은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경종 즉위년 청주 유생은 '辛巳誣獄'의 통문이 전달되자 집단으로 청주향교에 쳐들어가 노론계 유생을 축출하고, 향교를 폭력으로 장악하기도 하였으며 경기 유생 李夢寅은 칼을들고 대궐에 돌진하여 '신사무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46) 영조 즉위년(1724)에도 경주지방의 유생 백여 명이 宋時烈 영당을 훼철하고 그 화상을 불태웠다.47)이런 계통의 유생은 흔히 노론 당국자를 '흉역배'로 단정하고 30년 동안이나 國柄을 농단하고 言路를 두절시켰으며 私人 狎客을 각 군에 居間으로 포진시켜 뇌물 등을 몰래 거두었을 뿐이라고 공격하였다.48)

정권을 잡은 소론은 얼마되지 않아 緩少와 峻少로 분기하였다. 완소는 경종의 有疾을 인정하고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은연중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소론 사이에는 張氏追報와 立祠建號 문제, 남인계 수용문제, 壬寅獻에따른 노론 4대신의 正法行刑 문제, 壬辰科獄 및 숙종 45, 46년 양전사업의

⁴⁴⁾ 朴光用、〈英・正祖代의 蕩平策의 推移와 性格〉(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83), 5~6等.

^{45) 《}景宗實錄》권 5, 경종 원년 10월 기사.

^{46) 《}先庚後甲綠》 권 1, 경자(경종 즉위년) 8월 13일·12월 11일.

^{47) 《}英祖實錄》 권 4, 영조 원년 3월 경술.

^{48) 《}先庚後甲錄》권 6, 임인 9월 11일. 《景宗實錄》권 8, 경종 2년 5월 신축.

수정 문제를 놓고 내부 분열을 겪게 되었다.49) 여기에서 완소는 세제를 지키자는 입장에 더하여 일부는 온건 노론과의 보합탕평을 제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준소는 노론에 강경하며 남인측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광좌등 소론 원로대신도 처음에는 준소세력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나 김일경 등준소의 독주에 반발하였다.50) 당시 김일경 등 준소는 소론 대신을 비롯한 다수의 소론이 그들의 의도에 따르지 않자 소론 중에는 "역적(노론)의 至親이었어 모두가 감히 한 목소리로 임금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하였다.51)

마침내 김일경·박필몽 등 준소세력은 '金性宮人行藥事'의 査出을 전면에 내걸고 정국을 천단하려 했다. 당시 金姓宮人은 숙종의 후궁이던 金貴人(金壽與의女)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 張世相(延礽君房 宮監)·金省行(金昌集孫)이 이를 시켜서 경종을 독살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준소는 김성궁인을 사출하고 이사건의 전말을 조사해서 '孝宗血脈論'을 뒤집고 세제(영조)의 왕통계승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조정에서의 취약한 세력을 하급 관료와 외방 사족의 언론으로 지탱하면서 이광좌 등의 소론 대신과 완소세력까지도 축출하고자 하였다.52) 김일경 등은 남인을 동반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蕩平天下'를 주창하였다.

一鏡의 무리는 當局하여 천하를 탕평하고자 하였는데 생원·진사·유학은 물론하고 모두 州牧의 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위 '탕평천하'는 노론을 모두 죽이고 남인과 소론만을 등용한다는 것이었다(《推案及鞫案》136책, 을사罪人睦時龍等推案 沈廷玉更推).

이 때의 '南少蕩平論'은 완소는 물론 준소의 일부와도 대항 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성시·이진유 등의 준소는 남인과의 탕평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53) 남인 중에서도 청론을 자처하면서 남인 별과를 선언

⁴⁹⁾ 閔鎭遠,《丹岩漫錄》(《稗林》9), 170\.

[《]辛壬紀年提要》原編 2, 신축 10월 17일.

[《]景宗實錄》권 6, 경종 2년 정월 신축・을묘 및 권 11, 경종 3년 2월 무진.

⁵⁰⁾ 鄭萬祚、〈英祖代 初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推進〉(《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243~244\.

^{51) 《}景宗實錄》권 9, 경종 2년 8월 병인.

^{52) 《}景宗實錄》 권 14, 경종 4년 4월 정묘.

한 문외파도 남소탕평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김일경계 준소의 남소탕평은 실현되지 않았다. 경종이 재위 4년 8월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였던 것이다. 영조는 즉위하자 곧바로 김일경 등을 축출하고 이듬해(1725)에는 乙巳反獄을 단행하였다. 을사반옥은 신임옥의 허구성을 증명하고자 취해진 조치이기는 하지만, 김일경계의 宮禁세력을 축출하고 김일경이 주장한 남소탕평의 세력기반을 분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1720년대 초반은 당론에 의한 국왕선택으로 국가의 체제 위기가 깊어지고 지배층간의 상호 살육과 보복으로 점철되었다. 여기에는 영조의 의지도 있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종래 붕당세력의 해체와 재편의 계기가 되었다. 趙文命이 주창하고 趙顯命・宋寅命이 추진한 '탕평당'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破朋黨'의 기치 아래 완론과 시무론을 매개로 하여 縉紳세력의 보합을 주장하였다. 保合蕩平論은 인조반정 이래의 근기가 중심이 된 집권세력의 동질성・연계성에 기초하여 붕당대립을 지양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黨禍로 인하여 민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왕권이 동요함에서 오는 영조의 위기의식과 부합하여 점차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54)

붕당재편의 또 다른 흐름은 영조에 반대하고 노론을 제거하여 정국을 주도하려 한 무신란 주도층, 즉 '戊申黨'으로 실현되었다. 이들은 당론상으로 준소·탁남·소북을 표방하고 있었다. 무신당은 영조 원년 을사반옥 이후부터 구체화되었다. 김일경의 추종세력이었던 박필현·이유익 등의 주도로 상주의한세홍 괴산의 이인좌 등을 비롯하여 팔도에서 그 동조자를 포섭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金姓宮人'을 가려내자는 상소에 가담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서울에서는 李河·李思晟·閔觀孝·梁命夏·南泰徵·尹德裕·沈維賢등이 입당하였고, 지방에서는 鄭希亮(안음)·羅晚致(은진)·趙德奎·趙錦·任瑞虎(여주, 이천)·鄭世胤(용인)·權瑞麟·李昈(안성, 진위)·閔元普·閔百孝(충주)·金弘壽(상주)·李日佐(과천) 등이 가세하였다.

^{53) 《}先庚後甲錄》 권 7, 임인 9월 22일.

[《]景宗實錄》권 6, 경종 2년 정월 신축·권 8, 경종 2년 6월 을묘 및 권 11, 경 종 3년 2월 무진.

⁵⁴⁾ 朴光用,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297~300\(\frac{2}{3}\).

(2) 무신당의 반정계획과 지방토호 · 녹림당의 가세

무신당은 외방 사족 및 도성에 "선왕을 잊을 수 없으며 많은 사람이 슬퍼한다"는 내용을 전파하였다.55) 이것은 영조가 왕위를 불법으로 계승하였으며 경종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암시함으로써 자파세력의 명분과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영조 원년(1725)의 李天海 사건은 이러한 흉언이 빚어낸 사건이었다.56) 영조 2년 2월 경종 재위기간을 亂世로 단정한 노론 任徵夏의 상소로 인하여 파문이 크게 일어났으나 그 형벌이 유배에 그치자 무신당의 선전과 조직화는 유리한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57) 무신당은 소현세자의 중손인 密豊君 坦을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론이 효종의 혈맥을 강조하였다고 한다면 무신당은 소현세자의 적통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신당은 "도적이 외방에서 일어나면 경중에서 내용한다"고 하는 外起內應의 기본전략을 확정하였다.58) 이러한 외방기병·경중내용 방침은 당시 삼남에 편만한 유민과 그에 기반을 둔 녹림당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각 도를 주관하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충청·경상·전라도의 파는 서로 다른데 전라도 괴수는 成玉이며 경상도 괴수는 鄭桐溪의 증손이며 충청도의 괴수는 權道衡으로 자를 伯升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청파에 살았다가 流寓하여 청주에 있으면서 소북을 칭한다(《推案及 鞠案》戊申逆獄推案 권 3,4월 7일 羅崇大供).

여기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鄭桐溪의 증손은 정 희량의 부가 되는 정중원이었던 것으로 보면 '괴수'는 단순한 명화적수가 아 니고 인근의 사족·토호의 움직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인근 사족에 반정명분을 전파하고 또한 녹림당을 동원하

^{55)《}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2,4월 3일 任瑞鳳供.

^{56)《}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5,5월 2일 任環供.

^{57) 《}英祖實錄》 권 9, 영조 2년 2월 무인.

^{58)《}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4월 9일 韓世弘供.

였던 것이다. '정도령'을 자임하던 정세윤은 일찍부터 변산적을 중심으로 호남 녹림당과 체결하고 있었으며, 정희량은 영남에서 병사를 일으켜 상응하기로 하고 祖墓를 천장한다는 구실삼아 전곡을 비축하고 가동과 民丁을 모으기 시작하였다.59) 이인좌는 "지금이 말세인데 儒生,業武라 하더라도 어찌무릎을 궤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안동, 상주 사족의 궐기를 촉구하고, 그 매부이던 나숭대를 통하여 호남 녹림당과도 연결을 맺었다.60) 근기에서는 소론계 御醫 출신 任瑞鳳의 동생 任瑞虎가 정세윤을 도와 동병을 주관하였다. 외방에서의 거사준비가 진행되면서 외방 지휘권을 둘러싼 분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인좌가 이를 주관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는 남인 명가의 후광을 배경으로 근기·호서·영남 세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었다.무신당의 반정시도는 이인좌·정세윤 및 정희량 등이 체결한 재지토호 및녹림당의 동원 및 기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서울의 주도층은 영조 3년 (1727) 6월이 되어 경중내응을 위해 군사와 군자를 동원하고 모집하는 회합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던 차에 다시 소론정권이 들어섰다. 을사반옥으로 정권을 잡기는 하였으나 신임옥으로 그 세가 크게 위축되었던 노론은 이미 權相夏系가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또한 閱鎭遠의 洛黨과 李宜顯의 花黨으로 분립하였는데, 삼남의 대흉황으로 각처에 유민이 분출하는 상황에서도 영조가 "사사로운 복수를 앞세우고 국사를 뒤로 한다"라고 하였듯이 민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였다.⁶¹⁾ 소론으로부터도 "사무에 능숙하고 거관중의 처사가 본받을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緩老의 洪致中이 좌의정으로 있었지만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회불안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⁶²⁾ 정미환국은 영조 3년 7월 초하루에 있었다. 그것은 서울의 주도층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노론이 그대로 있다면 일은 용이하겠건만, 지금 소론이 천만 의외로 다시 들어갔으니 비록 완소가 들어갔다고 하나 준소에도 희망이 있게 되었으니 무

⁵⁹⁾ 정석종, 앞의 글(1994), 148쪽.

^{60) 《}推案及鞫案》 戊申逆獄推案 권 3,4월 11일 權榘供・권 4,4월 25일 李燾供.

^{61) 《}英祖實錄》 권 6, 영조 원년 6월 정묘 · 권 12, 영조 3년 7월 무오.

^{62) 《}景宗實錄》권 10, 경종 2년 12월 무진.

롯 인심이 조금이라도 느슨해 질 때 자못 영도(관직)로 부추기면 악심은 모두 해산하는 법이니 지금 洛中의 우리는 斂手觀望해야 후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5,5월 1일 任環供).

일부 서울의 주도층은 사태를 관망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좌·정세윤 등의 지방 주도층은 그 계획을 밀고 나갔다. 다만 반정계획을 다소 수정하였다. 서울의 주도층 일부가 소론정권 아래에서 외직에 보임된 까닭이었다. 무신당은 녹림당을 기반으로 한 외방거사에서 관군까지 동원하기로 하였다. 태인현감으로 부임한 박필현은 담양부사 심유현, 무장에 정배된 전참판박필몽과 함께 관군을 동원하는 호남기병을 추진하였다.(53) 그는 평안병사 이사성이 기병하면 포도대장 남태징이 그에 응하고 또한 전라감사 정사효를 포섭하여 호응하도록 하여 호남기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64) 평안병사 이사성은 평안병영에서 쌀을 징수하였을 뿐인 '收米軍'을 실제 동원하여 전투할 수 있는 정병으로 만들고 그 習陣을 강화하는 한편 鐵車의 제작을 시도하는 등의 군비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그는 병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군을 동원한 거사를 준비하였던 것이다.(55)

한편 호남 및 경상좌도의 토호는 자파 수령의 부임과 함께 그들과 접촉하여 외방거사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다. 고부의 송하, 부안 김수종, 진주 李德一, 순창 梁翼泰 등은 박필현·심유현 등과 접촉하면서 그들 휘하의 가노와 녹림당을 시켜 전주·남원·옥구·임피 등 전라도 각처에 영조가 경종을 독살하였다는 내용의 괘서를 살포하고 호남 유민이 근기로 유입되는 길목인여산의 산에 올라 같은 내용의 구호를 크게 부르짖기도 하였다.66) 정희량의심복인 鄭倬도 괘서사건에 가담하였다. 또한 도성에서 동원할 장사를 무장하기 위하여 담양관고의 화약을 빼내서 포도대장 南泰徵의 집으로 운반하였다.67) '변산적'의 소문은 더욱 널리 유포되었다.

^{63)《}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4,4월 24일 李之時供.

^{64) 《}推案及鞫案》 戊申逆獄推案 권 5,5월 8일 朴美龜供・권 3,4월 14일 朴師寬供.

^{65)《}英祖實錄》 권 13, 영조 3년 10월 임인.《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 3월 25일 李思晟供・권 5, 5월 8일 趙東奎供.

^{66)《}英祖實錄》 권 14, 영조 3년 12일 정유.《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8, 7월 10일 姜渭徵供.

이른바 邊山賊의 소문은 역시 苗脈이 있습니다. 金守宗은 집안이 부유하고 奴僕이 많았는데, 그 집은 변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먼저 朴弼顯이 50여 인을 이끌고 黔毛浦로 가서 그를 만나고, 弼夢도 茂長에서 재차 수십 인을 이끌고 배를 타고 김수종의 집에 모여 모의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변산적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습니다(《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7,6월 21일 高應良結案).

그런데 지방관으로 내려가 있던 무신당은 관군 등이 중심이 되어 거병하기로 하고, 지방 토호와 녹림당을 그 후원 내지는 거병의 보조세력으로 편제하려 했다. 나주세력이나 근기세력도 그들이 동원한 녹림당은 박필현 등이거사하면 그 후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李昈가 말하기를 박필현이 泰仁軍을 이끌고 전주를 함락하면 이호 자신은 그 후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몸에게는 성 안팎의 촌민 백여 명을 이끌고 이호와 같이 또한 후원이 되어 범궐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 4월 7일 羅崇大供).

그러나 근기 및 변산세력과 긴밀하게 결탁한 정세윤은 녹림당 세력을 주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는 금위영의 조총 수백 자루를 모르게 매입하여 근기지방의 녹림당을 무장하도록 조치하였다.⁽⁸⁸⁾ 또한 부안의 김수종 등으로 하여금 태인현감 박필현과 합세할 수 있으면 합세하지만 독자적으로 거병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김수종은 그 휘하의 노속 50여 명을 편대하는 한편 부안·고부의 진사·유학 및 파총·초관 등을 동원하기로 하였다.⁽⁹⁹⁾ 한편 정세윤은 이사성의 평안병영을 찾아가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군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때 이사성은 그 계획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67) 《}英祖實錄》 권 15, 영조 4년 정월 무인.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5,5월 10일 朴美龜結案・권 10,7유 정월 19일 李命根供.

^{68)《}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4월 15일 安妊・李檉・李溢面質、《南征錄》(계명대학교 소장)3월 24일.

^{69)《}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7,6월 21일 高應良供.

많은 군병을 얻을 필요는 없다. 만약 적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으면 국가는 반드시 나를 장수로 삼아 격퇴하게 할 것이다. 이 때를 틈타 군병을 합하면수월하게 힘이 될 것이다(《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4월 14일 安煌供).

그는 녹림당의 독자적 거병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호남과 근 기의 녹림당을 불신하였다.

사람들이 저처럼 忙迫하니 골칫거리이다. … 전라도에 도적이 있다 하나 壯士 4,5백 인이고 陽城의 도적도 4,5백 인을 넘지 못해 허술함이 막심한테 이로써 무엇을 족히 하겠는가(《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4월 9일 韓世弘供).

이처럼 지방에서는 토호 및 녹림당이 주도가 되어 거병하려는 움직임이 계획되는 속에서 외직에 복귀한 일부 무신당이 관군을 중심으로 거병을 계획하면서 적지 않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일면 "정해진 계략이 없고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한계가 내포된 것이었다.70) 그러나 지방에서는 관군 중심인가 녹림당 중심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거사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변산적의 존재는 호남유민이 근기로 대거 몰려듦에 따라 더욱기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조 4년(1728) 정월까지도 서울의 주도층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미환국 이후 서울 주도층은 정세의 변화를 관망하고 더 이상의 활동이 없었던 까닭이다. 이인좌 등의 지방 세력과의 마찰도일어났는데 그는 "일은 끝이 없는데 同黨은 매우 적다"는 말을 듣고 "어찌 在鄉者를 속이며 일을 꾸몄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71) 서울 세력도 더 이상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더욱이 정세윤 등이 녹림당을 주도로 외방기병을 구체화하는 이상 "가만히 있어도 화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72)

먼저 서울 주도층은 도성의 여론과 인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主上이 弑逆을 하였다"는 내용의 괘서를 종루와 서소문에 살포하였다.73) 탕평파 조현명의 집에도 흉서를 보냈다. 그리고 외방기병이

^{70)《}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 4월 9일 韓世弘供.

^{71)《}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3월 26일 李麟佐供.

^{72) 《}推案及鞫案》 戊申逆獄推案 권 3,4월 10일 韓世弘供・권 5,5월 1일 任還供.

이루어지면 서울과 여주 이천에서 사노층, 전호 그리고 향도군을 매수하여 군사를 삼아 성중을 교란시키고 이 틈을 이용하여 소론 당국의 핵심 인사들 인 李光佐·李森 등을 살해하기 위한 장사를 모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密豊君 坦의 4촌으로 禁軍의 별장으로 있던 李思周나 좌포도대장 南泰徵, 그리고 지평현감 南壽彦을 포섭하여 관군을 동원하고자 하였다.74)

(3) 무신란의 전개와 향촌사회의 동향

영조 4년(1728) 3월 초순부터 근기지방과 전라·경상도에서는 외방기병을 위한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정세윤 등은 김수종·성득하 등 부안세력의 거병을 지휘하기 위하여 부안(변산)으로 내려갔으며, 안동·상주에는 이인좌의 동생인 이웅보(이능좌)와 표종제인 조세추 등이 파견되었다. 이인좌 자신은 안성·양성·진위 등지에 양반과 마병 50여 명을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의 군사를 몇 군데로 나누어 집결시켰다.75) 영남과 호남에서의 군병이 오기를 기다려 합세하기 위함이었다. 한세홍은 평안병사의 거사 상경을 촉구하기 위해 평양병영으로 떠났다.

양성·진위 등지에 모인 녹림당은 노속, 협호(리하인), 화전민, 전호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변산적과 통하던 세력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칼등의 무기를 가진 자는 10명 중 1명 정도이었고 나머지는 장대를 들고 있는 정도였다. 76) 근기의 반군은 고변의 징후가 있자 몇 곳에 분산되어 있던 군사를 素沙坪으로 집결하였다. 이 때 다소 군기와 마필이 보충되면서 대오를 정비할 수 있었던 素沙陣은 청주로 진격하였다. 당색이 다른 병사가 청주병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영남과 호남의 군사가 오기 전에는 도성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77) 그러나 녹림당이 주축이 된 반군의 규모나전력으로 청주성 점령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73) 《}英祖實錄》권 15, 영조 4년 정월 무진·2월 무술. 閔鎭遠, 《丹岩漫錄》(《稗林》9), 188쪽.

^{74)《}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3월 18일 慎光遠,金重萬面質·3월 25일 李有 翼供 및 권 3,4월 9일 韓世弘供.

^{75)《}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3월 16일 金重萬供.

^{76) 《}推案及鞫案》 戊申逆獄推案 권 1,3월 16일 莫實・金重萬供 및3월 17일 安簿供.

^{77)《}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3월 26일 李麟佐供.

반군측의 선전선동은 이를 수월하게 하였다. 이 때 선전선동은 일부의 소론·남인·소북 등의 지방관이 모두 거사에 가담하였으며 해서 관서지방도모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전라도에서는 태인의 박필현과 담양의심유현이 기병하여 李明誼가 전라도 도원수가 되고 전라병사 趙儆이 후원이 되며, 또한 경상도에서는 이현좌(이인좌)가 장차 8만병을 몰고 온다"고하고, 나아가서는 "도성은 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잠입하여 내응을 하는데각창과 군기고가 하룻밤 사이에 불탄다"는 등의 내용이었다.78) 지리산·변산의 屯聚賊이 의병이 되어 근기로 몰려오며 이 때에는 鄭都수의 편에 서야 살 수 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79)

이런 상황에서 근기 호서의 행정·치안이 마비되어 東民이 도산하고 모두 도피하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 틈을 이용하여 반군은 청주성의 장교와 향리를 포섭하고 민가와 상통하여 쉽게 청주를 점령하였다. 80) 다음날부터 청주와인근 지방의 사태는 급변하였다. 연기군에서는 파옥사건이 일어났고, 청주북면에 거주하는 유학 柳海는 명화적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에 방면되자 기꺼이 반군에 가담하였고 문경의 적수 李奉春도 감옥을 빠져나와 청주의 반군에 가세하였다.81) 근기·호서의 200여 명에 이르는 남인·소론계 사족이청주의 반군진영에 합세하였다.82) 그리고 좌수를 지내고 향교의 수임을 지낸자를 비롯하여 향임층과 군관층이 대거 합세하였다. 당시 반군에는 "양반과서얼을 칭하는 자들이나 교활하여 군역을 피하고자 하는 白民"이 많이 참여하였고, "적도에 들어간 자들이 새로 이방이나 사령·급창이 되었고 서얼들은 이 때를 맞이하여 어깨를 으쓱대며 적진에 투입하였으며"좌수를 지내고향교의 수임을 지낸 자, 그리고 항임층과 군관층이 대거 합세하였다.83) 반군

^{78)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3월 16일 金玉成供・4월 25일 張欽供 및 권 2,4월 1일 李光積供.

^{79)《}勘亂錄》권 5,5월 신유 湖西按撫使金在魯狀啓.

^{80) 《}勘亂錄》권 1, 3월 율축.

^{81)《}戊申別謄錄》1책,3월 17일 忠淸監司權詹狀啓. 黃翼再,《華齊集》권 5, 素患錄 戊申日記.

^{82) 《}南征日錄》권 1, 3월 19일.

^{83)《}戊申別謄錄》2책,3월 27일 南漢巡撫使 金東弼狀啓·3책,4월 22일 忠州牧使金 在魯狀啓.

에는 피역층과 서얼 그리고 양반을 모칭하는 세력을 비롯하여 향임, 관임을 얻으려는 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반군의 세력은 크게 확대되면서 인근의 황간·회인·청안·목천·진천 등지에 반군측 수령이 파견되었다. 반군측도 "살인하지 않으며 재물을 빼앗지 않는다"라거나, "군역과 신역을 제감한다"는 등의 민정책을 반포하기도 하고 또한 민심을 회유하기 위하여 전곡과 포목을 나누어주었으며 또한 관노비에 상급을 내리고 환곡을 분급해주었다. 84) 당시 민의 자발적인참여는 매우 광범하였다. 당시 공주에 퇴거한 양반은 일반 행인이나 상인 등이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 형세를 이렇게 적고 있었다.

받가는 자에게 애휼을 베풀고 행인을 죽이지 않으니 思亂의 백성과 怨國의 무리가 모두 흥이 나서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갔다. 적세는 날로 치열해지니, 행로에서 투입한 무리는 죽을 각오를 한 군졸이 되었다(《戊亂錄》 3월 22일).

호남에서 금위영과 어영청으로 번상하기 위해 도성으로 가던 5哨에 달하는 군병이 반군에 들었는데 그를 만류하는 양반에게 이렇게 항변하였다.

進士같이 국가의 은혜를 입고 국가의 養育을 받으면 국가가 이렇게 되었을 때 힘을 다하겠지만 우리 옷 우리가 입고 우리 음식 우리가 먹는 우리 '꾼'(軍)에게 국가는 무엇이겠습니까(《戊申勘亂日記》권 1,3월 18일).

여기에는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부정의식이 깔려 있음을 보겠는데 이리하여 불과 2, 3백 명으로 시작한 반군의 세력은 각처·각층의 이반세력의 궐기를 유도하며 청주를 점령한 이후에는 처음의 10여 배로 늘어났다.85) 이처럼 반군세력은 근기·충청지방의 민심이반을 기반으로 청주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그 세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에서의 거병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안동· 상주의 사족층은 피난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으며 좌수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

^{84) 《}英祖實錄》권 19, 영조 4년 10월 무자.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2,4월 5일 李廷說供.

^{85)《}湖西散人實記》 권 1, 年譜 本邑趙僉正某戊申日記.

였고 다른 향임층도 가담하지 않았다. 반노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경상 좌도의 사족은 거사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론에 기대한 거병은 실패 하였던 것이다.86) 결국 안동이나 상주에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능좌·정희량은 경상하도를 중심으로 기병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안음현의 50여 호의 鄕品의 협조를 얻어 안음현감을 구축하고 곧 거창현도 점령하였다. 합천 굴지의 大姓이었던 曹聖佐도 향청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합천군을 장악하였다. 삼가·함양 등에서는 수령이 정희량과 조성좌의 기병소식에 접하고 방비를 서둘렀으나, 오히려 향청 등이 군사권을 장악하고 반 군측에 가담하고 말았다. 이 형세는 실로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수령들이 도망가서 피흘리지 않고 석권함"과 같았다.87) 이같은 순조로운 거사는 상주 안동과는 달리 향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여기에 흉년을 당하여 제반부세의 납부를 강요당하던 민인들이 호응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성은 해마다 흉년으로 기갈이 들었는데 춘궁을 당하여 미포의 독납이 있으니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에 적의 무리가 창곡을 분급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며,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배를 채워주니, 오로지 양민이본심을 잃고 투입하였다(《南征日錄》권 2,4월 2일 慶尙監司黃璿牒報).

그러나 이 지방에서의 거병이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안동·상주의 기병이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라좌도와 연계되지 않고서는 다른 지방으로 그세력을 확산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전라도에서의 기병도 주도층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필현의 관군 중심적 거병은 실패하였다. 그는 태인군을 이끌고 전주로 향하였으나 전라감사가 거부하자 곧바로 도망하고 말았다. 88) 녹림당과 연결하여 오랫동안 양병하며 이인좌·이호 등과 체결하였던나주세력도 가문 내의 일부 반대가 있자 거사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89) 고부·순창 등지의 녹림당을 지휘하였던 송하세력은 박필현과 협력하여 괘서를 살포하기는 하였으나, 군사적인 행동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

^{86) 《}勘亂錄》 권 4, 4월 병신, 曹世樞供.

^{87)《}南征日錄》권 2,3월 27일 沃川郡守林世濂諜報 嶺南大元帥檄文.

^{88)《}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9,8월 5일 李長郁供.

^{89)《}戊申別謄錄》2책,3월29일 南漢巡撫使金東弼狀啓內 尹熙慶招辭.

무릇 임실 回美山 속에는 많은 도적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때를 틈타 작변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런데 필현의 무리와는 계략과 모의가 다른 듯 하였는데 아마 필현의 무리가 기병하여 팔로가 소란하면 저들은 그대로 호남에서 할거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勘亂錄》권 4,4월 정유)

정세윤과 직접 체결하고 있었던 변산의 金守宗·成得夏 세력만이 적극적으로 거사에 들어갔다. 관군 중심의 전주 점령이 실패하였음에도 그들은 청주 반군과 합세하여 안성과 죽산의 전투에 참여하였다.90)

평안병사의 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기에서 모군이 한창 진행되는 3월 6일 평양으로 떠난 한세홍은 평안병사 이사성으로부터 가을을 기다려 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평안병사 이사성은 움직이지 조차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근기의 반군은 청주를 점령하여 근거를 확보하였지만 부안·변산의 일부 세력을 제외하면 영남과 호남의 반군과 합세할 수없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용인 어비곡에 퇴거하고 있던 奉朝賀 崔奎瑞가 급변을 알림에 따라 서울에 그 내용세력이 있을 것임을 간파하고 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의 정부는 궐문과 성문의 파수를 강화하고, 각 진에 금위영과어영청의 군사를 증파하여 외방인이 성내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그리고 도성에 살고 있는 김일경 등의 가속이나 己巳大臣의 자손을 투옥하여 내용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검속하였다. 또한 쌀값이 등귀하면 민심이 동요한다는 이유로 세곡을 성내로 운반하였고, 재정난을 이유로 체불된 공인의역가와 관료의 삭료를 미리 지급하였다. 이러한 치안·사회정책과 함께 都城死守論과 漢江守備令이 하달되었다. 무신당의 경중내용도 정부측의 효과적대응으로 좌절되었다. 황해도와 강원도에는 향병징발령을 발동하였다. 그리고 소론 오명항을 도순무사로 삼아 관군을 남파하였다.

청주 반군은 각처의 동조세력에 飛檄을 띄우면서 도성으로 진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각처의 유민·상인·화전민이 새로이 합세하여 일단 진천을 경유하여 안성·죽산에 이르렀으나 관군과의 전투에서 패주하게 되었다.92)

^{90)《}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7,6월 21일 高應良供.

^{91) 《}英祖實錄》 권 16, 영조 4년 3월 갑자・병인.

이로부터 반군에 동조하였던 향촌의 사정은 크게 변하였다. 반군에 가담하였던 군관·장교층은 반군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반군의 지도자를 체포하고 그를 토벌하는데 가담하였다.⁹³⁾ 각처에서 '倡義軍門'이 결성되고이들이 반군을 색출하는데 앞장섰다. 청주성은 사족 朴敏雄이 결성한 창의군문에 의하여 수복되었다. 창의는 주로 향소를 중심으로 속오군을 단속하고노비층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퇴각하는 반군세력의 색출 등을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경리청의 차인으로 與販料理로 민생을 침학하였거나 향임으로 荒政에서 죄를 얻어 정배된 자들도 창의에 적극 참여하였다.⁹⁴⁾

경상도에도 소모사가 부임하고 행정기구가 정상화되면서 사족층은 '義兵軍門'을 결성하였다.95) 3월 말경부터 서원과 향교가 중심이 되어 가솔·가노를 징발하여 대오를 편성하였다. 서원·향교·서당·부민 등은 군자를 기부하였다. 경상좌도의 '의병군문'은 거창·안음의 경상하도 반군세력을 군사적으로 토벌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방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치안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관고를 단속하고 백성이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수준이었다. 경상하도의 진주·거창 등지의 창의는 관군의 군사행동에 따라 군량를 보조하며 첩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창의는 소수의 향리가 향소를 중심으로 가솔을 동원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4) 무신란의 참가계층과 그 성격

무신란은 당론으로 국왕을 선택하는 정변차원의 반정운동에서 발단하였다. 이를 초기부터 주도한 무신당은 조선 후기 격화일로의 붕당대립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무신당에 참가한 세력은 갑술환국·신사옥·병신처분·을사반옥 등을 거치면서 노론측으로부터 '干犯名義'로 지목되었으며, 또한 반노론의 당 론 때문에 관직 진출이 여의치 않았거나 뜻을 펴지 못하는 교목세가의 후손

^{92) 《}英祖實錄》 권 16, 영조 4년 3월 계유.

^{93)《}湖西散人實記》 권 1, 年譜.

^{94)《}景宗實錄》권 15, 경종 4년 8월 정사. 李匡德,《冠陽集》권 9, 湖南御史書啓別單. 《戊申別謄錄》4책, 6월 21일 忠淸兵使趙儆狀啓·23일 湖西按撫使 金在魯狀啓.

⁹⁵⁾ 黄翼再、《華齊集》 권 5、素患錄 戊申日記.

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老論이 아니면 남으로 가던지 북으로 건너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노론정권 아래서는 宦路가 막혀있던 세력이었다.96)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권력층의 그것에 비해 원활할 수도 없었다. "우리친구들은 가난하다"고 하였던 이유익은 '청탁·수뢰·구걸·방납'을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었다.97) 이인좌는 "협민의 鐵治의 이익을 강탈한다"는 비판을들었는데 광산업에 종사하였을 것이다.98)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 몰락이 심하여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무신당에 가담한이인좌·이호를 사위로 맞이한 까닭에 국청에 잡혀온 尹鐫의 넷째 아들 尹景濟는 그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갑술년에 경중에서 임천으로 이사하여 7, 8년을 지낸 후 다시 선세의 분총이 있는 공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묘토를 경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에 장녀를 칠곡 양반가에 시집보내고 또한 칠곡인의 딸을처로 삼은 관계로 두 군데로 姻家가 되었는데, 아들과 사위 등이 그 土俗이 淳厚하고 전토가 또한 비옥하니 2, 3인가로 경작하고 남은 땅을 병작을 주면 百디의 배고픔을 면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가난하여 멀리 이사감이 심히 어려웠는데, 옮겨가려고 할 때에 이 몸이 妻喪을 당하여 객지에서 喪葬의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墓下의 논을 전부 팔아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8, 7월 1일 尹景濟供).

당대의 명가였던 윤휴 후손의 경제적 몰락상은 초년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마와 마차를 부릴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나 말년에는 입추의 땅도 없이 궁벽하게 되었음을 한탄한 李瀷의 처지를 연상하게 한다.99) 이러한 상황에서 이유익은 "성인이 못될 바에야 차라리 임꺽정과 같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질서에 강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100) 또한 여주의 조덕규 같은 사족은 강변의 漁箭 등은 1인이 세습하거나 혼자서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고 강변인 모두의 公共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96)《}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5,5월 7일 趙觀奎供.

^{97)《}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5,5월 2일 洪啓一供.

^{98)《}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2, 4월 6일 金弘壽供.

⁹⁹⁾ 韓沽劤, 《星湖李瀷研究》(서울大 出版部, 1980), 26쪽.

^{100)《}推案及鞫案》戊申遊獄推案 권 5,5월 20일 洪啓一供.

역시 독점 운영의 주체가 바로 집권 사족층이라는 점에서 느끼는 비판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101)

경종의 즉위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진출의 호기가 되었다. 이인좌는 생포된 이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평생 술을 좋아하였는데 경종을 위하여일을 도모한 8년간 술을 끊었다"고 한 것은 바로 경종 즉위를 정치권에의 진입의 기회로 포착하려는 염원이 그만큼 절실하였음을 토로한 것이다.102) 그러나 경종 즉위 이후에도 소수 준소를 제외한 다수의 소론은 '간범명의'로 지목된 남인(탁남)이나 소북에 대하여 가혹한 경계를 긋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세력에 더하여 남소탕평을 주도한 김일경 등의 준소는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을 제거하고 소현세자의 혈통에 따라 반정의 목적을 가지고 무신당을 결성한 것이다. 무신당은 선대로부터의 당론에 의한 정치적 경험의 공유 내지는 가문간의 세교와 인척으로서의 유대 등을 매개로 결성되었다.

경종 2년(1722) 간행된《錦城三稿》에 의하면 나주의 나만치·나숭대 등의선조인 나덕명 3형제는 鄭介淸의 문인으로, 鄭汝立 사건으로 일어난 己丑獄에 연루되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광해군과 鄭文孚를 도와 함경도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나씨 3형제는 이덕형·한백겸과도 절친하였는데 바로 나만치 등도 그 혈손들인 이지인·한세홍 등과 세교를 맺고 있었다. 《금성삼고》의 서문은 鄭重元과 閔昌道가 썼다. 나만치 등의 나주세력과 이지인·한세홍 그리고 정중원과 민창도의 아들인 정희량과 민원보도 모두 무신당에 들었던 것이다. 갑술옥 당시 감사를 지낸 李雲徵의 손자이며 기사대신의 1인이었던 李義徵의 종손으로 숙종 21년(1695)에 출생하였던 이인좌의 경우도 제(이능좌) 재종형(이일좌) 표종재(조세추) 4촌동서(이호) 매제(나숭관) 등이 무신당에 가담하였다.

무신당이 당론에 따른 반정을 기도함에 있어서 외방에서 기병하고 서울에서 내용한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은 지방사족·토호층이 가세하고 녹림당이 이에 호용하였기 때문이었다. 토호는 지방의 상권과 수공업을

^{101)《}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0, 12월 26일 丁錫震供.

^{102) 《}南征日錄》 권 2,3월 24일. 《湖西散人實記》 권 1 年譜.

장악하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노비와 협호(籬下人)를 적지 않게 거느리고 있었던 鄕曲의 부자였다.103) 이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은 있었을지라도 노론세가와 연계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었다. 오히려 집권관 료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당하기 십상이었다. 괴산의 李時薰, 공주의 李之時 등은 노론계 관료 때문에 노비소송에서 낭패를 당하 고 산소를 탈취당하기도 하였으며 노론 李縡가 대사성이었을 때 과거에 합 격하고도 낙방으로 처리되었다. 또 이들은 治盜과정에서 적도의 누명을 쓰기 도 하고 변산적간에서는 수령에 대항한 죄로 유배당하기도 하였다.104) 이러 한 세력이 외방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자를 제공하였던 것이며 각처의 녹 림당과 체결하여 이를 동원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몰락하여 儒醫・地師로 각처를 유랑하거나 "매우 가난하여 땅과 노비도 없이 고역에 종사하거나 薪木을 파는 일"을 하였던 몰락양반도 가세하였다.105) 이들이 거 사에 적극 가담한 것은 "무신년에는 素服이 일어나는 해이다"라거나. "무신 년에는 白衣書生이 조정을 채울 것이다"와 같이 무관사족을 벗어나 관직으 로 진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106) 그들은 국왕선택으로 빚어진 권 력투쟁을 "남아가 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107)

무신당은 이같은 토호 및 몰락 양반을 통하여 녹림당을 동원하고 당색이 같은 사족들의 궐기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신당에 의한 사족의 궐기와 외방토호의 거병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외직에 나가있던 반노론 사족 관료는 그들 대부분이 이를 회피하였으며 퇴거하였거나 유배된 경우에도 그에 응하지 않았다. 부안의 토호와 변산적의 일부 동원이 있었으며 경

^{103) 《}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4월 8일.

^{105)《}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2,4월 2일 朴天齊供.

^{106) 《}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3, 4월 15일 安錠·李聖·李諡一處面質 및 권 4, 4월 23일 蘇檉供·4월 30일 羅斗多供 및 권 5, 5월 10일 朴美龜·柳晉禎面質. 관작은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위치에 따라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지방토호에게는 대체로 수령이나 만호 등의 직책이 약속되었다.

^{107)《}推案及鞫案》戊申逆獄推案 권 1,3월 20일 安樞供.

상하도에서의 몇 개 군에서의 동참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청주 점령이후 반정세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안성, 죽산전투로 이어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향혼사회에서 많은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처의향족, 향품 등의 재지세력을 비롯하여 군관, 교생, 서얼 그리고 私奴, 婢夫, 通引, 官奴 그리고 군역을 지고 있는 일반민이 가세하였던 것이다. 피역층도 다수 가담하였음은 물론이다. 당시 군관·교생은 정부에서 명호를 인정한 대신 1필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를 군역민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혐오하였다.108) 또한 일반 농민은 인징, 첩징의 중압을 당하고 있었다. 한 반군참가자는 그에게 부과된 군역세의 가중함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이 몸의 사촌되는 敏悌는 騎兵이고 그 두 아들은 砲保軍과 軍餉保였습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이 몸이 그들의 일족이라고 하여 3명의 身役과 還上을 납부하였던 것입니다(《推案及鞫案》戊申遊獄推案 권 2,4월 6일 林益齊供).

조선사회 신분제와 군역제에서의 피해계층이 대거 참여하였던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농민은 흉년을 당한 상황에서 각종 부세의 독려에 고통을 당하던 차이었다. 정부와 지배층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당시 정부도 이런 사정을 인정하였다.

해마다 흉년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령은 고식에 머무니 부세가 백골에 사무치며, 조정은 서로 창칼을 드리대고 수령은 탐학하여 더욱 곤궁하게 되는데, 사무는 완고하여 날을 보내고 풍속은 날로 사치해졌다(《勘關錄》권 4,4월 임인).

李瀷도 무신란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병란의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다.

오로지 문벌을 숭상하면 才能人이 思亂하고 나라에 罪籍이 많으면 坐罷人이 사란한다. 政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忿嫉者가 사란하고 濟活이 제 때를 맞추지 못하면 困窮者가 사란한다(李 漢,《星湖僿說》권 7, 人事門 衰季思亂).

^{108) 《}英祖實錄》 권 7, 영조 원년 8월 갑술 · 권 11, 영조 3년 정월 기해.

그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광범한 이반계층의 결합에 의하여 병란이 일어 남을 암시하고 있다. 국가의 민정, 형정의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과 저항에서 병란의 주체적 한 조건을 찾았던 것이다. 당시 중세적 신분제와 국가정책으 로 인하여 민생의 곤란을 겪거나 상승과 성장에 장애를 당하게 되었던 여러 사회계층이 지배층의 권력투쟁을 기화로 그들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그에 투 신하였던 것이다. 아직은 민중 스스로의 주도성에 바탕한 주체적 운동을 펼 쳐나간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무신란은 비록 정변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지만 17세기 후반이래의 하층천민 및 상민층의 운동과 상공인 세력의 움직임, 실세한 양반층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극적'의 존재가 영향을 끼치며 가세하여 거대한병란으로 폭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신란은 어느 한 세력의 독자적이며자기 완결적 체계 안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계층 내면의 취약성을 잇고있는 여러 세력간의 상호 연대 복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무신란은 조선 후기 정치체제·권력구조의 내부갈등에서 발단되었지만, 유명 사족이 민중을 동원하여 감행한 최대 규모이면서 최후의 권력투쟁인 동시에 16, 17세기 이래의 고립적·국부적 민중운동의 흐름을 수용하고, 당시 각 사회계층의 이반행동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었던 데에서 조선 후기 민중운동의 질적 비약의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하겠다. 이후 조선 후기 민중운동이 사족층의 탈락과 배제를 수반하면서 殘班·향임층을 주도층으로하여 하층민을 여러 형태로 동원하였던 발전단계를 거쳐 잔반과 하층민의일체성을 바탕으로 성숙단계로 이행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볼 때 무신란은민중운동발전의 필연적 통과점으로서 과도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李鍾範〉